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Public Building Design Procurement Methods

염철호 Youm, Chirho  
박석환 Park, Seokhwan  
이혜원 Lee, Hyewon

(aur)

## 일반연구보고서 2019-2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Public Building Design Procurement Methods

|      |                                  |
|------|----------------------------------|
| 지은이  | 염철호, 박석환, 이해원                    |
| 펴낸곳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출판등록 | 제2015-41호(등록일 '08.2.18.)         |
| 인쇄   | 2019년 12월 26일, 발행: 2019년 12월 31일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
| 전화   | 044-417-9600                     |
| 팩스   | 044-417-9608                     |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11-5659-262-4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염철호 연구위원

|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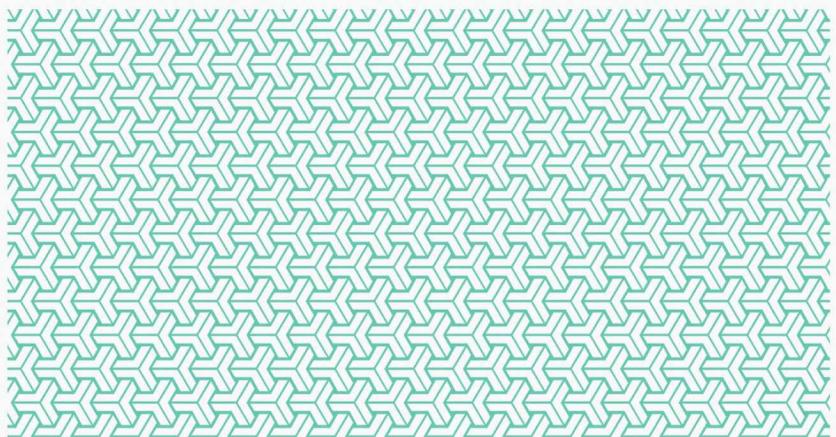
박석환 연구원, 이혜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Summary

# 연구요약



2019년 4월 제7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설계공모는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분야 설계발주방식에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발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그간의 건축 설계발주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0.1.16.)으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업 규모에 따른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발주 제도의 재평가와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설계발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 새로이 도입되는 설계발주 제도를 고려한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공모 방식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한정하며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도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 이후의 설계공모 제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공모 방식과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설계공모제도의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근거하여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7년 7월에 일부 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2019년 4월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 원(현 2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의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

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되었다. 이후 2017년 6월 사업규모별로 평가기준의 형평성 제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설계공모 대상 건수(설계비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 수는 조달청 통계자료 기준으로 276건(현행대비 63%), 건설공사(건축부문)에 대한 통계청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1,658건(현행대비 17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평균적으로 재산정 하였을 때 658건(현행대비 143%)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설계공모 대상 건수 증가로 인해서 공공건축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설계사무소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참여 격차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함께 예상된다.

2015년도 1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총 4,743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공모의 종류는 일반설계 공모가 전체 사업 건수의 5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안공모의 경우는 1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입찰 및 기타 계약건수도 각각 25%,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설계공모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설계공모 건수 대비 제안공모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입찰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의 경우는 전체 사업의 28% 수준에 그쳤으며, 나머지 사업은 설계공모 공고 시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추후에 공개하거나 미공개하고 있다. 공모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비율이 24%로 제안공모 43%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설계공모 제출물의 경우 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제출물을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거나 이를 합쳐서 하나의 적정수준에 제출물을 요구한 사업은 전체의 2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6%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사업규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5~10억 원 사이에 사업이 준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5억 원 미만의 사업 및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적정제출물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준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공모비 보상은 사업규모 커질수록 낮은 비율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공모의 경우 평균 4천만 원(5%), 제안공모의 경우 평균 1천1백만 원(2%)정도로 나타났다. 제안공모 과제의 경우 제안공모 418건 중 제

안공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술제안 과제를 요청한 사업은 전체 사업 중 78% 정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22% 사업에서는 제안공모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도면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일정은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공모일로부터 심사일까지 총 공모기간이 평균 78 일이 나왔으며 제안공모의 경우 총 공모기간은 평균 40일이 나왔다.

설계공모 제도 개선관련 관계자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설계공모 우선적용대상의 적정 범위, 건축 기획 등 사전업무 참여 업체의 설계공모 참여 제한 여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절차 보완, 단일안 응모 시 심사 허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심사결과 및 심사과정 공개 강화 및 확대, 제출 도서의 표현방식 등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으로는 실적 산정 시 최소 참여 기간 기준 적용, 유사용역실적 산정기준 개선,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에 대한 찬반, 신용도 평가 기준을 하향 조정, 발주기관마다 상이한 업무 중복도 평가 기준을 일원화, 공동도급방식에 대한 산정기준 개선, 적정 수준의 제출물 요구 및 평가 문제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위의 제도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설계발주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설계 착수 전에 해당 설계업무의 범위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우선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설계자와 발주자, 그리고 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취지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사업에 제출물 및 공모기간을 최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간이공모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한 참가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Long-List 방식 또는 Short-List 방식 도입을 통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공모 참여 비용을 낮추는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사업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는 안목을 보유한 심사위원 구성절차 및 방법을 보완하여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의 유지 여부 재검토를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이 많은 경력 및 실적 산정 기준, 참여건축사(보)의 실적 증빙 방식, 업무 중복도 산정 기준 시기, 별점 적용 업무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한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의 확대,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등급 간 점수 차 이 축소 등 신진 및 소규모 건축사가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타사항으로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도 평가 등급기준의 하향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동도급방식에서의 대표업체와 참여업체의 평가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설계공모 수준의 제출물을 요구 및 평가하는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의 성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법 시행(14.06) 이후의 설계공모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설계공모방식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제어

공공건축 설계발주,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

# 차 례

## CONTENTS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4  |
| 1) 연구의 범위                                    | 4  |
|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5  |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
|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 9  |
|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 10 |
|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 15 |
|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17 |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 29 |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 29 |
|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 내용 | 33 |
| 3)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35 |
|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 39 |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39 |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 41 |
| 제3장 설계발주 방식 운영현황 분석                          | 45 |
| 1.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                              | 46 |
|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 46 |
| 2) 설계공모 관련 주요사항별 분석                          | 48 |
| 2.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 58 |
| 1) 설계공모 관련 주요 질의 내용                          | 58 |
| 2) 설계공모 개선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 60 |

---

# 차례

CONTENTS

|                               |     |
|-------------------------------|-----|
|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 64  |
|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주요 질의 내용    | 64  |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 65  |
| 4. 설계발주방식 개선방향 도출             | 67  |
|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향                | 67  |
|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향           | 69  |
| <br>제4장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방안        | 71  |
|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 72  |
| 1) 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 72  |
| 2) 간이공모방식 도입                  | 74  |
| 3)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77  |
| 4)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81  |
| 5) 기타 개선 사항                   | 83  |
|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 85  |
|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 93  |
| 1)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 93  |
| 2)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사항     | 98  |
|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사항            | 102 |
| <br>제5장 결론                    | 105 |
| 1. 연구의 성과                     | 106 |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110 |
| <br>참고문헌                      | 111 |

---

## 표차례

LIST OF TABLES

|   |    |
|---|----|
| [표 1-1] 설계발주방식 관련 선행연구  | 7  |
| [표 2-1] 현행 3개 설계공모 관련 지침 주요내용 비교  | 27 |
| [표 2-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기준 비교                              | 30 |
| [표 2-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비교 | 32 |
| [표 2-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 34 |
| [표 2-5] 현행 3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기준 주요내용 비교                                      | 36 |
| [표 2-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40 |
| [표 2-7] 2014년~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용역 계약금액별 현황                                | 41 |
| [표 2-8] 2016년 건설공사(건축) 통계 공사규모별_공사종류별_기성실적                                | 42 |
| [표 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건수 추정 최종안                         | 43 |
| [표 3-1] 조달정보개방포털 설계용역계약 내역에 따른 조사 대상 수                                    | 46 |
| [표 3-2] 설계공모의 종류  | 48 |
| [표 3-3] 제안공모 금액별 전수   | 48 |
| [표 3-4]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 50 |
| [표 3-5] 일반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여부  | 51 |
| [표 3-6] 설계공모 보상비 비율   | 53 |
| [표 3-7] 일반설계공모 보상비 비율   | 53 |
| [표 3-8] 제안공모 보상비 비율   | 53 |
| [표 3-9] 제안공모 과제 준수 비율   | 54 |
| [표 3-10] 심사위원 공개 여부와 제안과제 준수 비율   | 55 |
| [표 3-11] 일반설계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 56 |
| [표 3-12] 제안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 57 |
| [표 4-1] 설계공모 방식 비교  | 76 |
| [표 4-2]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 85 |
| [표 4-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간이공모방식 도입)                                    | 86 |
| [표 4-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87 |
| [표 4-5]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사위원회 추천 근거)                                   | 88 |
| [표 4-6]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89 |
| [표 4-7]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건축설계 이외 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회 참여비율 축소)               | 89 |
| [표 4-8]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출도서 관련 규정 유연성 제고)                             | 90 |

---

## 표차례

LIST OF TABLES

|   |     |
|---|-----|
| [표 4-9]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 유연성 제고) ——          | 90  |
| [표 4-10]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단독응모 시 후속 절차 보완) ——————             | 91  |
| [표 4-11]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일부 개선 및 유연화) — 92      |     |
| [표 4-12]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 96  |
| [표 4-13] 「건축 PQ기준」의 참여건축사(보) 경력·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98  |
| [표 4-14]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99    |     |
| [표 4-15] 「조달청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99 |     |
| [표 4-16]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100       |     |
| [표 4-17]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101       |     |
| [표 4-18]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 10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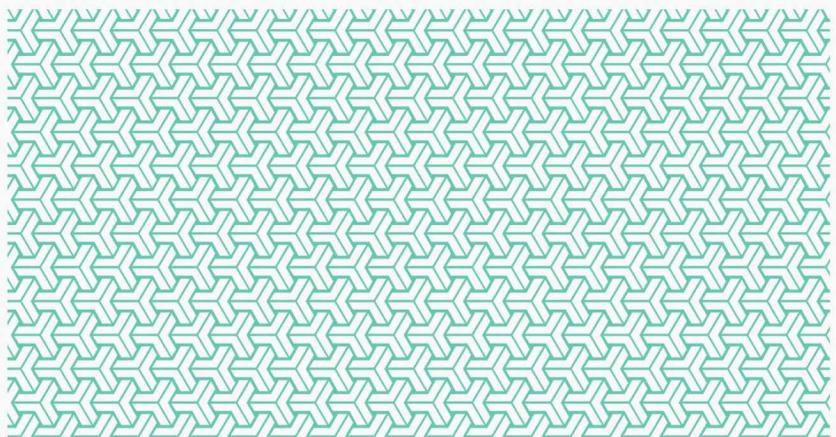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  |    |
|--|----|
| [그림 3-1] 설계공모 종류 연도별 추이 ——————                     | 49 |
| [그림 3-2]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연도별 추이 ——————               | 50 |
| [그림 3-3] 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연도별 추이 ——————                 | 51 |
| [그림 3-4] 설계공모 제출물 미준수 사항 연도별 현황 ——————             | 52 |
| [그림 3-5] 공모 종류별 보상비 연도별 추이 ——————                  | 54 |
| [그림 3-6] 제안공모 과제 준수 여부 연도별 추이 ——————               | 55 |
| [그림 4-1]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특징 ——————                      | 72 |
| [그림 4-2]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절차 —————— | 77 |
| [그림 4-3]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                        | 78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축 분야의 설계발주방식 운용

-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건설기술 진흥법」(과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 관련 설계용역 발주제도가 분리되어 건축설계에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
- 동법에 따라 일정 규모(설계비 2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자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사업 중 일정 규모(설계비 1억 원) 이상은 동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으로 능력평가를 실시
- 또한, 설계공모 방식 중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평가하는 '제안공모'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 중 여러 해가 경과하면서 공모방식으로서 확대 및 정착되고 있는 추세

### □ 건축 분야의 설계발주방식의 여건 변화

-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2019년 4월 제7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이 발표되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설계공모는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sup>1)</sup>
-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발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그간의 건축 설계발주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 건축 분야의 설계발주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0.1.16.)으로 설계공모 우선 적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2019),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4월 18일자 보도자료.

용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발주 제도의 재평가와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새로 도입된 제안공모 방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

#### □ 연구의 목적

-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설계발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 새로이 도입되는 설계발주 제도를 고려한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1) 연구의 범위

#### ① 내용적 범위

##### □ 설계용역 발주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공모방식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한정
-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또한,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제외

##### □ 관련 법령

- 설계발주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공공건축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용역계약 관련 법령

##### □ 관련 지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유관 지침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유관 지침

#### ② 시간적 범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시기인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용역을 실태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설정

##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① 연구의 주요내용

#### □ '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이후의 설계공모 제도 현황 분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 활성화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설계공모 관련 주요 내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타 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설계공모 관련 지침의 비교 분석

#### □ '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이후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 활성화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주요 내용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타 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관련 지침의 비교 분석

#### □ 설계공모 방식의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그간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접수된 설계공모방식 개정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 설계공모 방식 운영 실태조사 ('14.06~'18.1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예측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그간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접수된 설계공모방식 개정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운영 실태조사('14.06~'18.12)

#### □ 설계공모 제도 개선방안

- 제출물의 간소화 방안 및 심사의 변별력 확보 방안
- 설계공모 방식의 다변화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식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개선방안

-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차별성 확보
- 변별력 확보 방안
- 소규모 업체 참여 확대 방안
- 일부 기관의 변칙적인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개선방안

### ② 연구의 방법

#### □ 설계발주 방식 운영 현황 실태조사

- ('14.06~'18.12)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사례 분석
- 행정소송 제기 등 문제 사례 발굴

#### □ 설계발주 관련 주체 의견 수렴

- 그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설계발주 관련 질의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 관련 협회 및 설계사무소 등 설계자 대상 의견 수렴
-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자 대상 의견 수렴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설계발주가 진행되었고, 설계공모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개정을 검토한 선행연구가 진행
- 염철호·임유경 (2012)에서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설계 발주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고,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설계 공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도입 시 상당 부분이 반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공공건축 설계발주방식을 다른 연구는 전무
-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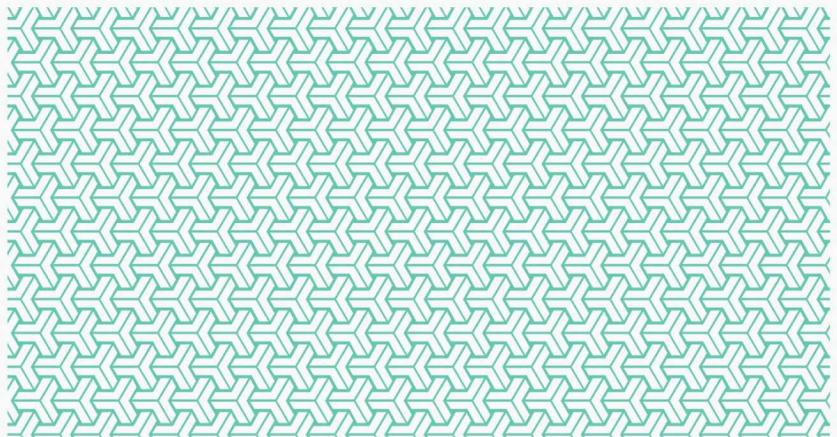
[표 1-1] 설계발주방식 관련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목적  | 주요 내용  |
|---|---|--|
| 건설교통부(2007), 「설계경기 및 기술공모방식 개선방안 연구, 2편 설계경기 공모방식 개선방안 연구」  | 공공건축 설계의 특성 및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설계공모방식 운영지침 개정안 도출 및 세부지침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설계공모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li><li>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제시</li><li>신진건축사 및 여성건축사 건축설계 수주기회 제공방안 제시</li><li>설계경기 운영지침 개정안 제시</li><li>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표준모델 개발</li></ul>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연구-건축프로세스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건축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li><li>건축 프로세스 개선방안</li><li>에너지 효율 제고방안</li><li>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기대효과</li></ul>  |
| 염철호·임유경(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창의성·기술력 위주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심으로-」 |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안 연구-창의성·기술력 위주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사업 설계자 선정방식의 발주체계 분석 및 현황파악</li><li>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검토</li><li>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검토</li><li>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방안 검토</li><li>건축사법인 제도 도입방안 검토 (부록)</li></ul> |
| 염철호·조상규(2014),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도를 위해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도를 위해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분석</li><li>공공건축 설계발주 사례 분석</li><li>친환경 및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발주 제도 개선방안</li></ul>   |

※ 출처 : 연구진 작성



##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설계공모 관련 사항

### □ 목적 및 취지

-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함

### □ 설계공모의 활성화

-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sup>2)</sup>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함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2020년 1월 16일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됨

-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 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타 법에서의 설계공모 관련 사항

### □ 「건축기본법」

-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동법 시행령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 개선제안 뿐만 아니라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건축기본법」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의 건설기술의 정의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해당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각 목의 경우  
가.~라. (생 략)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획득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 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 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함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따라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라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르도록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국가계약법」과 유사하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마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자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 따라서 「국가계약법」과 달리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2개 조문에서 계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을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타 법에 따라 설계공모를 진행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 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연혁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근거하여 2014년 6월에 제정되었음
- 이후 2017년 7월에 일부 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설계비 감액지급 행을 개선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 2019년 4월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 원(현 2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 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연혁

[시행 2014. 6.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2014. 6. 12., 제정]  
[시행 2017.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4호, 2017. 7. 31., 일부개정]  
[시행 2019.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 4. 30., 일부개정]

### ②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신진건축사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 지역제한 관련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 해당 지역을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추가로 명시함

#### □ 사전접촉 방지 관련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에서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 당선작 선정

-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에서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도록 함

#### □ 당선작 선정 이후 취소

-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 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 평가방식

- 제20조(평가)에서 기준에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 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어떤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함을 추가로 명시함

#### □ 공모비용의 보상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를 통해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함

#### □ 제안공모에서의 3차원 이미지 사용

- 제33조(제출도서 등)에서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①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요령을 2011년 5월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정함
- 이후 2012년 3월 분산되어 있던 기존 입찰 및 계약 관련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2개로 통합하여 개편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흡수됨
- 이 때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5. 심사위원회의 개최 부분 가운데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는 시점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변경함

\*개정연혁

[시행 2011. 6.] [행정안전부예규 제361호, 2011. 5. 18., 제정]

[시행 2012.4.2.]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 3. 22., 일부개정]

#### □ 심사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함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됨

#### □ 심사위원의 자격

-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앞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함

## ②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함
- 초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1월에 제정되었음
- 2014년 8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기준 관련 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바뀌게 됨으로써 일부개정 되었음
- 2015년 6월에는 2014년 8월 개정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는데, 공모안의 제출 및 반환에 대한 내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의 평가에 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다른 기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 경기규준」을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후 2017년 4월, 평가항목별 점수의 영향력 왜곡(역전)이 발생되었으며 경직된 전문분야와 평가항목 운영으로 사업특성 반영이 곤란하고, 심사결과 동점발생 시 재평가 절차와 입장자 보상비 지급기준에 모순이 있어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되었음
- 2018년 1월에 또 한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관련협회, 업체 등에서 제기한 설계비 전액지급으로 수의시답지연·재시답 빈발 등에 대한 민원 해소, 사업 특성 및 용도에 따른 배점기준(예시) 수정,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위원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청년건축사 발굴·육성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관계부처 지침을 반영하고자 함
- 2019년 5월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시행 2019. 4. 30.)」 개정 사항, 설계공모 확대(추정가격 2억 원→1억 원 이상) 및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 19.1.2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모 증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계획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심사를 확대하고자 함

|  |
|--|
| *개정연혁  |
| 조달청 시설기획과-121호, 2011. 01. 11                         |
| 조달청 시설기획과-2575호, 2014. 08. 05                        |
| [시행 2015. 6. 19.] [조달청지침 제2625호, 2015. 6. 19., 일부개정] |
| [시행 2017. 4. 3.] [조달청지침 제993호, 2017. 2. 27., 일부개정]   |
| [시행 2018. 1. 1.] [조달청지침 제7269호, 2017. 12. 26., 일부개정] |
| [시행 2019. 5. 15.] [조달청지침 제1735호, 2019. 3. 25., 일부개정] |

#### □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정의

- 2018년 1월 개정된 제3조(용어의 정의)에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

#### □ 청년건축사

- 2018년 1월 개정된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부터 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용역에서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 제출도서

- 2019년 5월 개정되면서 추가된 제8조의2(제출도서)를 통해 설계지침서에서 허용하지 않은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 다만, 발주기관이 상징성·예술성·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뮬레이션(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 감점 및 실격

- 2019년 5월 개정되면서 추가된 제13조의2(감점) 및 제13조의3(실격)을 통해 감점 및 실격 항목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특히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도 감점사항으로 포함함

#### □ 심사위원의 자격

- 2019년 5월 개정된 제16조(심사위원의 자격)에서 기존 운영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과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5급 이상 건축직 공무원

으로서 건축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예술성·상징성·역사성 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 사전접촉 방지 관련

- 2018년 1월 개정된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에서부터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 □ 음부즈만 참관

- 2019년 5월 개정된 제19조의2(음부즈만 참관)를 통해 용역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그 밖에 예술성·상징성·역사성 등 공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달청 청렴음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 온라인 심사

- 2018년 1월 개정된 제21조(심사방법 등)에서부터 용역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22조(온라인심사방법)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

#### □ 입상작 취소

- 2019년 5월 개정된 제25조(입상작)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이 결정된 이후에 당선작에 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타 입상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 □ 제안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예시)

- 2017년 4월 개정을 통해 기존 담당건축사의 경력을 명확하게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으로 수정하였으며, 2018년 1월 개정을 통해서는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최근 10년간)에 대한 부문을 삭제하고,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에 최대 매수를 1매에서 2매로 증가시킴

□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 2018년 1월 개정을 통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 점수를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의 점수를 80점으로 높임

□ 전문분야(평가항목)별 우선순위(예시)

- 2019년 5월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시공 외에 디자인 분야가 추가됨

### ③ 3개 지침 간 비교 분석

#### □ 근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음

#### □ 신진건축사 및 청년건축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 여전에 따라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가 필요한 경우 시행의 근거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는 설계비 및 건축사의 나이 제한을 명시하여 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한해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 시행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재함

#### □ 지역 제한 관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및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1. 입찰공고에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서는 지역제한 관련 내용이 부재함

#### □ 익명성 확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공모안의 제출)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공모안의 제출)에서는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4. 공모안의 제출 부분에서는 익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 공모안 심사대상 제외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공모안의 제출)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공모안의 제출) 및 제13조(공모안 검토)에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4. 공모안의 제출 부분에서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 사전접촉 금지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사전접촉 금지 등)에서 사전접촉 금지 위반 및 신고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명시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재함

#### □ 심사위원의 자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 건축사뿐만 아니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조교수급 이상의 경우는 정확한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도 포함하고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사전에 공개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내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름
  - 그 외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5급 이상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예술성·상징성·역사성 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

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그 밖에 해당 건축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음

#### □ 심사위원회의 구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서는 5~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 심사위원회의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 참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서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 가운데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에서는 수요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할 경우 1인 이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 심사위원 공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에서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에서는 기준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자문위원회 중에서 공모안 접수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에서는 심사 위원 명단을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음

#### □ 심사위원 제척 기준

-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에서는 최근 2년 이내라고 기간을 명확히 명시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기간에 대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에서 일반적인 내용들로 명시되어 있음
- 심사위원 해촉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8조(심사위원 해촉)에서만 언급되어 있음

#### □ 심사위원회 개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5. 심사위원회의 개최에서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 시 개최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0조(회의소집 및 개최)에서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1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2/3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공모안 설명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5. 심사위원회의 개최에서는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3조(공모안 설명)에서는 세부적으로 발표자료의 형태, 발표순서 추첨방법, 발표시간, 발표자에 대해 설명되어 있음

#### □ 온라인 심사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와 제22조(온라인 심사방법)를 통해 다른 기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온라인 심사 적용대상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 □ 평가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 및 26조, 34조에서는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토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재함
- 특히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 저작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사후 활용 등)에서는 입상작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0조(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10. 기타사항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 □ 공모비용 보상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7조(공모비용의 보상)에서는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에서는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예산의 1/3을 지급하는 것에 반하여,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서는 예산의 4/10을 지급함

## □ 모형제작 요청

- 유일하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입상작)에서만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2-1] 현행 3개 설계공모 관련 지침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br>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조달청지침 제1735호]<br>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br>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
|---------------------------------|---|--|--|
| 신진<br>건축사<br>및 청년<br>건축사        | - 여건에 따라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br>하기 위한 공모가 필요한 경우 시행의<br>근거 내용을 담고 있음   | - 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한해<br>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등을 발굴·<br>육성하기 위한 공모 시행을 할 수 있다<br>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해당 내용 부재   |
| 지역제한<br>관련                      | -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 해당 내용 부재   | -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 의명성<br>확보                       |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등이 의명성 확보<br>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br>도록 하고 있음  |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등이 의명성 확보<br>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br>도록 하고 있음   | - 해당 내용 부재   |
| 공모안<br>심사대상<br>제외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br>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br>있다고 명시함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br>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br>있다고 명시함  | -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 사전접촉<br>금지<br>및 심사<br>위원의<br>임무 | - 해당 내용 부재  | -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되, 주관부서<br>등은 평가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br>공모안에 유 불리하게 평가하여 문제<br>를 야기한 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br>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br>심사를 회피한 자는 해촉할 수 있음  | - 해당 내용 부재   |
| 심사<br>위원의<br>자격                 |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br>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br>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br>-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br>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br>경험이 있는 사람<br>-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br>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br>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br>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br>-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내<br>용은 부재함 | -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조달청 기술자<br>문위원회<br>-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br>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br>는 사람<br>-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10년<br>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5급<br>이상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3<br>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br>- 예술성, 상징성, 역사성 등이 요구되는<br>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등에 관하여<br>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br>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br>- 그 밖에 해당 건축분야에서 전문지식과<br>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br>사람 | - 건축사뿐만 아니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br>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br>- 조교수급 이상의 경우는 정확한 분야를<br>명시하지 않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br>자<br>-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br>단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br>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심사<br>위원회의<br>구성                | - 5~9인으로 구성   | - 5~9인으로 구성  | - 10인 이내로 구성   |
|                                 | -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br>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br>원을 구성할 수 있음  | - 수요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자를 대<br>표할 경우 1인 이내에서 심사위원으로<br>선정할 수 있음   |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br>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br>촉하여서는 안 됨   |
| 심사위원<br>공개                      | - 설계공모 시행 공고시 공개하도록 하고<br>있음  | - 기존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br>자문위원회 중에서 공모안 접수 전에<br>심사위원을 선정  | -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br>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br>어 있음   |
| 심사위원<br>해촉                      | - 해당 내용 부재  | - 해당 내용 존재   | - 해당 내용 부재   |

| 구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br>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조달청지침 제1735호]<br>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br>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
|-----------|--|--|--|
| 심사 위원회 개최 | -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시 개최 가능   | - 전문분야별 위원 각1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2/3출석으로 개최                 | -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시 개최 가능                      |
| 온라인 심사    | - 해당 내용 부재   | - 해당 내용 존재   | - 해당 내용 부재                                       |
| 평가방식      | -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br>-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함 | - 해당 내용 부재   | - 해당 내용 부재                                       |
| 모형제작 요청   | - 해당 내용 부재   | -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 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 | - 해당 내용 부재                                       |
| 저작권       | - 입상작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 발주기관에서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 - 발주기관에서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
| 공모비용 보상   | -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   | -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                 | - 종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                    |
|           |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1/3을 지급   |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4/10을 지급                          |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1/3을 지급                     |

※ 출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 활성화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주요 내용

- (목적 및 취지)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발주 방식 마련 및 운영
- (적용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
- (평가방식)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위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들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말한다.
-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건설기술 진흥법」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항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
-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호)」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정함

\*개정연혁

- [시행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1호, 2015. 6. 30., 제정]
- [시행 2016. 3.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 2015. 12. 30., 일부개정]
- [시행 2017.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7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시행 2018.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7호, 2017. 12. 20., 일부개정]
- [시행 2019.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2호, 2018. 12. 26., 일부개정]
- [시행 2019. 4.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 2019. 4. 10., 일부개정]

- 2019년 4월 1일 개정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의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자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개선
- 2019년 4월 10일 개정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개선을 위하여 설계부문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이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 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 간 점수 격차도 축소하며,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춤

[표 2-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기준 비교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시행 2018. 4. 1.] | [시행 2019. 4. 1.]  | [시행 2019. 4. 10.]   |
|-------|---------|------------------|---|---|
| 참여기술인 |         | (50)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 ~ 100% 인정</li> <li>-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li> <li>- 벌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li> </ul>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 ~ 100% 인정</li> <li>-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li> <li>- 벌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li> </ul> |
| 책임기술인 | 등급      | (4)              | (3)   |   |
|       | 경력      | (5)              | (4)<br>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실적      | (6)              | (5)   |   |

|             |              |   |   |
|-------------|--------------|---|---|
|             |              |   |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5)   | (4)<br>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력           | (8)   | (7)<br>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실적           | (9)   | (8)<br>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2)   | (4)<br>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력           | (3)   | (5)<br>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실적           | (3)   | (5)<br>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7)   | (6)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7)   | (6)   |
|             | 용역수행 성과      |   | (2)<br>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br>*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br>- 건설신기술 : 1.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2)<br>- 건설신기술 : 2.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 활용실적         |   | (3)<br>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br><br>(3)<br>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③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관련 사항

####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목적)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
- (적용 방식)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으로 평가기준 구분
- 2014년 8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됨

\*개정연혁

[시행 2014. 8. 8.] [조달청지침 제7037호, 2014. 8. 6., 제정]

[시행 2018. 4. 1.] [조달청지침 제1824호, 2018. 3. 30., 일부개정]

- 2018년 4월 개정
  - 합리적인 계약금액 결정으로 용역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소규모 설계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

[표 2-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비교

| 평가항목                |           | [시행 2014. 8. 8.] | [시행 2018. 4. 1.] |
|---------------------|-----------|------------------|------------------|
| 담당건축사               | 경력        | 25               | 20               |
|                     | 실적        | 20               | 15               |
| 참여건축사(보)            | 경력        | 10               | 15               |
|                     | 실적        | 5                | 10               |
| 담당건축사의<br>유사용역 수행실적 |           | 20               | 20               |
| 신용도                 |           | 10               | 10               |
| 업무종복도               | 담당건축사     | 10               | 15               |
|                     | 참여 건축사(보) | 5                | 10               |

※ 출처 : 연구진 작성

##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 내용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

-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방식)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으로 평가기준 구분
- (변경 및 조정)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함
  -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조정 절차)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선정 절차)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함
- 초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12월에 고시되었음
-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됨

\*개정연혁

[시행 2014. 6.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6호, 2014. 6. 12., 제정]

[시행 2017. 6.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 2017. 6. 2., 일부개정]

- 2017년 6월 개정
  - 사업규모별로 평가기준의 형평성 제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

### 선하기 위함

- 또한,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였음

[표 2-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 구분          | [시행 2014. 6. 12.]<br>개정 전   | [시행 2017. 6. 2.]<br>개정 후   |
|-------------|---|--|
| 평가점수        | 제8조(평가점수 계산)<br>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제8조(평가점수 계산)<br>④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한다. <전문개정><br>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 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
| 세부평가 기준     | 담당건축사 경력(20→25), 실적(15→20)<br>상향조정  | 참여건축사(보) 경력(15→10), 실적(10→5)<br>하향조정   |
|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br>②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 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br>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br>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만 인정하고, 고시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인정한다. |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br>②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 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br>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br>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한다.             |

※ 출처 : 연구진 작성

### 3)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 근거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음

#### □ 적용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에 적용됨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됨

#### □ 적격자선정 결격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에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부재함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를 통해 발주기관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함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서도 발주청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함

- 이에 반해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해당 내용이 부재함

#### □ 적격자 등의 선정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에는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에는 보다 더 자세하게 평가결과 점수를 명시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선정함. 또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반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해당 내용이 부재함

[표 2-5] 현행 3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기준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br>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지침 제1824호]<br>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br>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 적용기준        | -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기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    | -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기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   | -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
| 적격자선정<br>결격 | - 해당 내용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li> <li>-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li> <li>-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li> <li>-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이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li> <li>-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li> </ul> | - 해당 내용 부재  |

| 구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br>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지침 제1824호]<br>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br>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             |   | <p>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li> <li>-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li> <li>-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li> </ul> |   |
| 적격자 등의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 인자를 선정)</li> <li>-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 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용 부재</li> </ul>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li> <li>-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용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청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함</li> <li>-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li> </ul>  |
| 세부평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어진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math>\pm 20\%</math>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음(이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li> <li>-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li> <li>- 발주기관은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등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용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청은 주어진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함</li> <li>-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math>\pm 20\%</math>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li> <li>-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등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됨</li> <li>-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 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됨</li> </ul> |

|         |   |  |  |
|---------|---|--|--|
| 구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br>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지침 제1824호]<br>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br>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 안 됨   |  |  |
| 평가결과 통지 |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함                | - 자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 라장터에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함</li> <li>-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서류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함</li> </ul> |
| 이의신청    |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출처 : 연구진 작성

###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예측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 개정 이유<sup>3)</sup>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임
-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 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 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 확대함
- 또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함

##### □ 주요 내용<sup>4)</sup>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제1항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됨
-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제3항)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는 의무를 강화함

3) 국토교통부(20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1.

4) 국토교통부(20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2.

[표 2-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p> <p>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2. (생 략)</p> <p>② ~ ⑤(생 략)</p> | <p>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설계비 추정가격이 <b>1억원</b>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현행과 같음)</p> |
| <p>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p> <p>① · ②(생 략)</p> <p>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할 때에 해당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전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 <p>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공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처리방향을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전에 <b>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b>〈후단 삭제〉</p>                    |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 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건수 증가 규모 산정

#### □ 2014년~2016년 조달청 설계용역 계약 현황

-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설계 용역 중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시설 개·보수 및 설치, 방수, 포장, 철거, 인입공사 등의 설계용역을 제외하면, 시행령 개정 전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설계비 2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 사업 수는 평균 378건 수준임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 수는 평균 240건으로 현행 대비 6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다만 해당 통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업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표 2-7] 2014년~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용역 계약금액별 현황 (단위:건)

| 설계계약 금액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1억원 미만         | 1,891 | 2,677 | 3,237 | -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212   | 231   | 276   | 추가 대상              |
| 2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320   | 352   | 422   | 현행 대상              |
| 20억원 이상        | 8     | 18    | 15    | 현행 대상<br>(사전검토 면제) |
| 합계             | 2,431 | 3,278 | 3,950 | -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2016년 건설공사 통계 현황

- 2016년 건설공사(건축)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시행령 개정 전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설계비 2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 사업 수(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는 평균 923건임
- 건설공사(건축) 통계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산하기에는 설계비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비 20억 원 구간이 없어 추정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우선 공사비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 수는 633건임
- 공사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이 2,051건으로 이 중 공사비 20억 원 이상 사업을 전체의 50%로 단순 가정할 경우 1,025건으로 추산됨
- 따라서 2016년 건설공사(건축)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할 경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 수는 1,658건으로 현행 대비 17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다만, 건설공사(건축) 통계자료의 건수 중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시설 개·보수 및 설치, 방수, 포장, 절거, 인입공사 등의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에는 현행 통계의 한계가 있음

[표 2-8] 2016년 건설공사(건축) 통계 공사규모별\_공사종류별\_기성실적

| 공사규모             | 합계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공기업   |
|------------------|--------|-------|--------|-------|-------|
| 합계               | 12,388 | 2,976 | 6,580  | 1,389 | 1,443 |
| 4,000만원 미만       | 2,036  | 434   | 1,259  | 266   | 77    |
| 4,000~5,000만원 미만 | 234    | 66    | 127    | 28    | 13    |
| 5,000만원~1억원 미만   | 1,145  | 316   | 648    | 119   | 62    |
| 1~2억원 미만         | 1,641  | 364   | 989    | 176   | 112   |
| 2~5억원 미만         | 2,176  | 517   | 1,229  | 231   | 199   |
| 5~10억원 미만        | 1,549  | 381   | 840    | 162   | 166   |
| 10~30억원 미만       | 2,051  | 565   | 1,017  | 197   | 272   |
| 30~50억원 미만       | 633    | 152   | 261    | 78    | 142   |
| 50~100억원 미만      | 506    | 128   | 163    | 72    | 143   |
| 100~200억원 미만     | 210    | 36    | 37     | 37    | 100   |
| 200~500억원 미만     | 121    | 13    | 4      | 19    | 85    |
| 500~1,000억원 미만   | 65     | 3     | 4      | 3     | 55    |
| 1,000억원 이상       | 21     | 1     | 2      | 1     | 17    |

※ 출처 : 통계청 건설통계 자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5&tblId=TX\\_36501\\_A016&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5&tblId=TX_36501_A016&conn_path=l3))

####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건수 추정

- 2016년을 기준으로 수치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달청 계약현황과 건설공사(건축) 통계자료의 평균치로 단순 계산할 경우, 현행 설계공모 대상 건수는 연간 680건이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대상에 포함되는 건수는 연간 967건으로 산정됨
-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 창고시설 등 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건축물 중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

외되는 용도의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약 32% 정도의 비중임<sup>5)</sup>

-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현행 설계공모 대상 건수는 약 460건이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계공모 대상에 포함되는 건수는 약 660건으로 현행 대비 143% 증가하며, 연간 총 설계공모 대상 건수는 1,12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표 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건수 추정 최종안 (단위:건)

| 구분 (설계비)      | 조달청 자료 기준 | 건설통계 기준 | 평균    | 설계공모 대상 |
|---------------|-----------|---------|-------|---------|
| 2억원 이상        | 437       | 923     | 680   | 462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276       | 1,658   | 967   | 658     |
| 합계            | 713       | 2,495   | 1,647 | 1,120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② 설계공모 대상 건수 증가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 □ 공공건축물의 전반적인 품격 향상 기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설계비 1억 원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은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임
-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 경쟁력이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설계안이 구현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동력

-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은 도시, 조경, 토목 등 타 산업에 비해 민간시장의 비중이 크고 수의계약 위주의 수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왔음
- 따라서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디자인 경쟁력을 키워 공공부문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보다는 영업과 소개 등에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임
- 그동안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이나 적격심사 등으로 설계자를 선정하여 왔기 때문에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시장에서는 기술력 및 디자인 경쟁력이 설계수주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음

5) 동수 기준 교정 및 군사시설 10.9%, 창고시설 3.9%, 용도 불명 3.9%, 기타 용도 13.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8),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p.8. 참조)

-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공모 확대는 디자인 경쟁력이 영향을 끼치는 설계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성장하는 계기가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건축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발주기관의 설계공모 부담 가중

- 조달청에 따르면 매년 연간 약 100건 정도의 건축 설계공모 대행을 수행 중<sup>6)</sup>이며, 이는 현행 설계공모 대상 건수로 추정되는 사업의 22% 정도에 해당됨
-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의 조달청 관련 인력 및 조직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1,000건 정도의 설계공모를 발주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업체나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됨

#### □ 건축사사무소의 지역 편중에 따른 설계공모 참여 업체 수의 격차 문제 심화

-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건축서비스산업 업체의 46%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특·광역시에 약 70%의 업체가 위치함<sup>7)</sup>
- 또한 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무를 수주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설계공모 건수가 증가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가 굳이 지방의 소규모 사업의 설계공모에 참여할 확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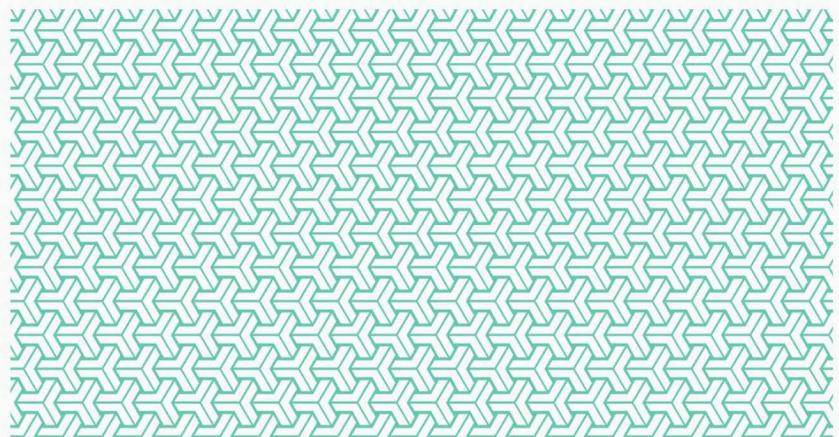
- 건축사사무소가 일반설계공모에 참여할 경우, 3개월 정도의 공모기간 중 투입되는 인건비, 도면 및 설명서, 모형 및 도판 등의 제출물 제작비, 외주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음
- 제안공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나, 이 역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나의 설계공모에 적은 경우 3~5개 업체, 많은 경우 20개~30개 정도의 업체가 경쟁하게 되므로 설계공모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6) 조달청 관련 부서 담당자 확인 결과로 추정치임

7) 서수정·유제연(2017),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91.

# 제3장 설계발주 방식 운영현황

## 분석



1.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
2.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4. 설계발주방식 개선방향 도출

## 1.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

###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 □ 조사 목적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공모 등과 관련된 운영 실태 및 각 항목 별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 조사 대상

- 조달청 나라장터 상 설계용역 계약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설계공모 운영 실태 조사 이므로 설계용역비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 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동일한 사업이 유찰되거나 과업 내용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재공고 된 사업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15년도 1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총 4,743건의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해당 공고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유찰 건을 제외한 순수 조사 대상 사업은 3,147건으로, 연평균 33%정도의 사업이 유찰이 되는 여건임을 파악하였음

[표 3-1] 조달정보개방포털 설계용역계약 내역에 따른 조사 대상 수 (단위:건)

| 년도   | 총 공고 건수 | 유찰 건 제외 공고 건수 | 유찰 비율 |
|------|---------|---------------|-------|
| 2019 | 543     | 446           | 17.9% |
| 2018 | 1,245   | 778           | 37.5% |
| 2017 | 1,121   | 735           | 34.4% |
| 2016 | 1,047   | 667           | 36.3% |
| 2015 | 787     | 521           | 33.8% |
| 합계   | 4,743   | 3,147         | 33.6%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 조사 방법

- 조달정보 Data Base 사업 리스트 자료 및 3,147건의 사업의 공고자료(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공모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확보하여 전수 열람하여 해당 사업별 내용을 심층 조사함

#### □ 조사 내용

- 조달정보 Data Base 상에서는 사업의 기본개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함. 사업명, 발주방식, 유찰여부, 고시금액, 낙찰률, 계약금액, 설계공모보상비 등을 조사함
- 각 사업별 공고자료(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공모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사한 세부항목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일반설계공모 제출물 수준, 제안공모 과제의 적절성 등을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2) 설계공모 관련 주요사항별 분석

### ① 설계공모의 종류

-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사업의 발주 방식
  - 일반설계공모가 전체 사업 건수의 58%정도를 차지
  - 제안공모의 경우는 14%를 차지
  - 그 외에 입찰 및 기타 계약건수도 각각 25%, 3% 정도를 차지
- 설계비 기준으로는 일반설계공모의 비율이 53% 정도로 낮아지고 입찰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비율이 32%, 4%로 높아짐
  - 입찰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가 일반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한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전반적으로 큰 사업임을 알 수 있음

[표 3-2] 설계공모의 종류

| 일반설계공모           |     | 제안공모            |     | 입찰              |     | 기타              |    | 총 건수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1,665            | 58% | 418             | 14% | 708             | 25% | 89              | 3% | 2,880            |
| 합계금액             | 비율  | 합계금액            | 비율  | 합계금액            | 비율  | 합계금액            | 비율 | 총 금액             |
| 15,036.51<br>억 원 | 53% | 3,288.95<br>억 원 | 11% | 9,082.84<br>억 원 | 32% | 1,147.23<br>억 원 | 4% | 28,555.53<br>억 원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제안공모는 설계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44%를 차지함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도 43%를 차지하고 있고, 10억 원 이상도 12%를 차지하고 있어, 제안공모가 소규모 사업에만 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표 3-3] 제안공모 금액별 건수

| 설계비              | 건수  | 비율   | 고시금액 평균        |
|------------------|-----|------|----------------|
| 합계               | 418 | 100% | -              |
| 2억 원 미만          | 3   | 1%   | 183,329,667원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86 | 44%  | 336,853,094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78 | 43%  | 721,773,246원   |
| 10억 원 이상         | 51  | 12%  | 2,690,453,902원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설계공모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설계공모 건수 대비 제안공모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입찰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그림 3-1] 설계공모 종류 연도별 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②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 심사위원 공개 방식 및 시기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사업 2,083건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조사함
- 전체 2,083건의 사업 중 심사위원 명단 공개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585건으로 전체 사업의 28% 수준에 그쳤으며, 나머지 1,496건의 사업은 설계공모 공고 시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추후에 공개하거나 미공개함
  - 심사위원 명단을 추후 공개한 경우 참가등록 후 00일 이내 공개, 작품제출 시 홈페이지에 게시, 작품 제출 후 개별공지, 심사 몇 일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문구로 표시함
  - 명단 공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사업은 미준수 사업 중 72%정도를 차지
- 일반설계공모 1,665건과 제안공모 418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반설계공모의 준수 비율이 24%로 제안공모 43%로 보다 낮게 나타남
  - 제안공모의 경우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이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또한 준수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안공모의 경우 공모기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설계공모공고 시 명단을 함께 공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공고할 방법이나 시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표 3-4]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 전체 : 2,083건     |     |        |     |
|-----------------|-----|--------|-----|
| 준수 건수           | 비율  | 미준수 건수 | 비율  |
| 585             | 28% | 1,496  | 72% |
| 일반설계공모 : 1,665건 |     |        |     |
| 준수 건수           | 비율  | 미준수 건수 | 비율  |
| 404             | 24% | 1,261  | 76% |
| 제안공모 : 418건     |     |        |     |
| 준수              | 비율  | 미준수    | 비율  |
| 181             | 43% | 237    | 57%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지속적으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준수 건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공모건 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제안공모의 경우 연도별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



[그림 3-2]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연도별 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③ 설계공모 제출물

- 일반설계공모 1,665건 중을 대상으로 설계용역비 금액규모별로 설계공모 제출물을 얼마만큼 요구하는지에 대해 조사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 제출물을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한 사업 또는 이를 합쳐서 하나의 제출물만 요구한 사업을 적정수준의 제출물을 요구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제출물 요구 수준을 적절하게 ‘준수’ 한 사업으로 분류

- 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 이외에도 설계도판, 설계모형 등을 요구한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구분
- 적정 수준의 제출물을 요구한 사업은 전체의 24%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제출물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은 76%로 나타남
- 설계용역비 금액 규모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5억 원 미만의 사업의 준수비율보다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사업에서 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는 30%의 비율로 준수 하였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는 50%의 비율로 준수
  - 이는 소규모 설계공모에서 중규모 설계공모 보다 과도한 제출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제출물 비율은 19%로 낮은데 이는 설계공모 보상비 금액 규모도 커지므로 설계도판이나 모형 등 추가 제출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5] 일반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여부 (단위:건)

| 설계비              | 제출물 준수 | 비율  | 기타    | 비율  |
|------------------|--------|-----|-------|-----|
| 합계               | 654    | 39% | 1,011 | 61% |
| 2억 원 미만          | 1      | 0%  | 15    | 1%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97    | 30% | 395   | 39%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29    | 50% | 378   | 37% |
| 10억 원 이상         | 127    | 19% | 223   | 22%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미약하기는 하나, 점차 제출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 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연도별 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미준수 사유 가운데 설계도판이 추가된 경우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설계도면과 도판, 혹은 설계설명서와 도판, 설계도면 및 도판, 모형 등의 경우가 있었음
- 다만, 2015년도에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도판, 모형 등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4] 설계공모 제출물 미준수 사항 연도별 현황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④ 공모비용의 보상

- 전체 2,083건의 평균 설계비는 8억 7천만 원이며, 공모보상비 평균금액은 3천4백만 원으로 나타나 비율로 따지면 4%에 그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상 설계용역비의 10%를 보상비로 책정하도록 한 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사업일수록 높은 비율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모 보상비율도 낮아짐

[표 3-6] 설계공모 보상비 비율

| 설계비              | 전체    |         |         |        |
|------------------|-------|---------|---------|--------|
|                  | 건수    | 고시금액평균  | 보상비 평균  | 보상비 비율 |
| 합계               | 2,083 | 8억7천만 원 | 3천4백만 원 | 4%     |
| 2억 원 미만          | 19    | 1억1천만 원 | 1천5백만 원 | 14%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778   | 3억4천만 원 | 2천만 원   | 6%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885   | 7억2천만 원 | 3천6백만 원 | 5%     |
| 10억 원 이상         | 401   | 23억 원   | 6천3백만 원 | 3%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제안공모의 경우 제출물이 간소하고, 지침에서 보상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비 규모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나 7백만 원~ 2천2백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보상비용을 책정하고 있음

[표 3-7] 일반설계공모 보상비 비율

| 설계비              | 일반설계공모 |          |         |        |
|------------------|--------|----------|---------|--------|
|                  | 건수     | 고시금액평균   | 보상비 평균  | 보상비 비율 |
| 합계               | 1,665  | 8억5천만 원  | 4천만 원   | 5%     |
| 2억 원 미만          | 16     | 1억 원     | 2천2백만 원 | 22%    |
| 2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 592    | 3억4천만 원  | 2천3백만 원 | 7%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707    | 7억2천만 원  | 4천1백만 원 | 6%     |
| 10억 원 이상         | 350    | 22억4천만 원 | 7천1백만 원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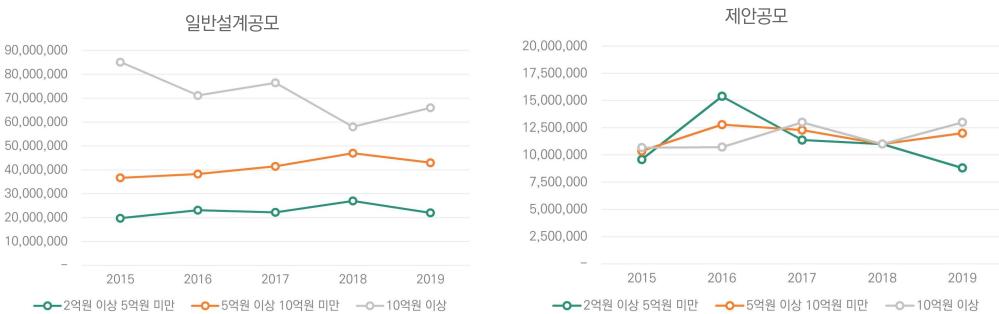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표 3-8] 제안공모 보상비 비율

| 설계비              | 제안공모 |          |         |        |
|------------------|------|----------|---------|--------|
|                  | 건수   | 고시금액평균   | 보상비 평균  | 보상비 비율 |
| 소계               | 418  | 9억8천만 원  | 1천만 원   | 1%     |
| 2억 원 미만          | 3    | 1억8천만 원  | 7백만 원   | 4%     |
| 2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 186  | 3억3천만 원  | 1천1백만 원 | 3%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78  | 7억2천만 원  | 1천2백만 원 | 2%     |
| 10억 원 이상         | 51   | 26억9천만 원 | 1천2백만 원 | 4%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 공모보상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공모보상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안공모의 경우에는 연도별 추이의 특징은 없음



[그림 3-5] 공모 종류별 보상비 연도별 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⑤ 제안공모 과제

- 제안공모 418건 중 제안공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술제안 과제를 요청한 사업은 전체 사업 중 78% 정도를 차지함
- 나머지 22% 사업에서는 제안공모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도면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제안공모 과제 준수 비율

| 설계비              | 제안과제 준수 |     | 제안과제 미준수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합계               | 326     | 78% | 92       | 22% |
| 2억 원 미만          | 3       | 1%  | 1        | 1%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50     | 46% | 36       | 39%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37     | 42% | 41       | 45% |
| 10억 원 이상         | 37      | 11% | 14       | 15%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제안공모 418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여부를 같이 조합하여 교차 분석을 진행함
  -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준수한 사업은 181건이며, 준수하지 않은 사업은 237건으로 나타남
  - 심사위원 명단을 명확히 공개한 사업은 제안과제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미준수한 사업은 제안과제도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심사위원 공개 여부와 제안과제 준수 비율

| 심사위원 공개여부 | 공개                  |    |          |    | 비공개 |     |     |    |     |
|-----------|---------------------|----|----------|----|-----|-----|-----|----|-----|
|           | 181(43%)            |    | 237(57%) |    | 준수  |     | 미준수 |    |     |
| 설계비       | 준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 2억 원 미만             | 1  | 1%       | 1  | 1%  | 1   | 0%  | 0  | 0%  |
|           | 2억 원 이상<br>5억 원 미만  | 66 | 58%      | 26 | 39% | 84  | 40% | 10 | 42% |
|           | 5억 원 이상<br>10억 원 미만 | 33 | 29%      | 33 | 49% | 104 | 49% | 8  | 33% |
|           | 10억 원 이상            | 14 | 12%      | 7  | 10% | 23  | 11% | 7  | 29%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2016년까지 대부분 제안공모 과제를 발주방식 특성에 맞게끔 제시하고 있었으나, 2017년~2018년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도면을 요구하는 등 해당연도 제안공모 건수의 70%이상이 미준수하여 점차 제안공모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3-6] 제안공모 과제 준수 여부 연도별 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⑥ 공모일정

### □ 일반설계공모

- 일반설계공모 1,665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188건을 제외한 1,477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참가등록일은 공고일로부터 평균 11일, 작품제출일은 공고일로부터 평균 57일, 심사일은 공고일로부터 평균 10일로 총 공모기간은 평균 78일에 해당함

- 참가등록일의 경우 평균 일수 11일 미만인 사업들이 11일 이상인 사업들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금액대가 커질수록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작품제출일의 경우 20일 이상 57일 미만인 사업들이 41%~60%로 57일 이상인 사업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심사일의 경우 평균 일수 11일 미만인 사업이 11일 이상인 사업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금액대가 커질수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총 공모기간은 설계비 2억 원 미만 사업들은 78일 미만의 경우가 67%를 차지하며, 설계비 2억 원 이상 사업들은 78일 미만의 경우와 78일 이상의 경우가 각각 50% 내외의 비율을 보임

[표 3-11] 일반설계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 설계비      | 참가등록일      |            | 작품제출일      |            | 심사일              |           | 총 공모일      |            |            |            |
|----------|------------|------------|------------|------------|------------------|-----------|------------|------------|------------|------------|
|          |            |            | 20일<br>57일 |            | 90일<br>90일<br>미만 |           |            |            |            |            |
|          | 11일<br>미만  | 11일<br>이상  | 20일<br>미만  | 57일<br>이상  | 90일<br>이상        | 11일<br>미만 | 11일<br>이상  | 78일<br>미만  | 78일<br>이상  |            |
| 2억 원 미만  | 8<br>53%   | 7<br>47%   | 1<br>7%    | 9<br>60%   | 3<br>20%         | 2<br>13%  | 9<br>60%   | 6<br>40%   | 10<br>67%  | 5<br>33%   |
| 2억 원 이상  | 329<br>62% | 203<br>38% | 4<br>15%   | 293<br>55% | 200<br>37%       | 37<br>7%  | 347<br>65% | 187<br>16% | 260<br>49% | 274<br>51% |
| 5억 원 미만  | 401<br>65% | 217<br>35% | 11<br>2%   | 357<br>58% | 223<br>36%       | 28<br>5%  | 401<br>65% | 218<br>35% | 326<br>53% | 293<br>47% |
| 10억 원 이상 | 218<br>71% | 89<br>29%  | 6<br>2%    | 126<br>41% | 142<br>46%       | 35<br>11% | 212<br>69% | 97<br>37%  | 149<br>48% | 160<br>52% |
| 소계       | 956        | 516        | 22         | 785        | 568              | 102       | 969        | 508        | 745        | 732        |
| 합계       | 1,472      |            | 1,477      |            |                  | 1,477     |            | 1,477      |            |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 제안공모

- 제안공모 418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47건을 제외한 371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공고일로부터 참가등록일의 경우 평균적으로 9일, 작품제출일은 평균 21일, 심사일은 평균 9일로 총 공모기간은 평균 40일에 해당함
- 참가등록일의 경우 9일 미만이 9일 이상 사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작품제출일의 경우 21일 이상인 사업에서 2억 원 미만인 사업은 3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업은 51%,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59%로 금액대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공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됨

- 심사일의 경우 9일 미만인 사업과 9일 이상인 사업이 유사한 비율이나,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는 9일 미만인 경우가 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총 공모기간은 40일 미만 사업이 40일 이상 사업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충분한 공모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제안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 설계비      | 참가등록일     |           | 작품제출일     |           | 심사일       |           | 총 공모일     |           |
|----------|-----------|-----------|-----------|-----------|-----------|-----------|-----------|-----------|
|          | 9일<br>미만  | 9일<br>이상  | 21일<br>미만 | 21일<br>이상 | 9일<br>미만  | 9일<br>이상  | 40일<br>미만 | 40일<br>이상 |
| 2억 원 미만  | 2<br>67%  | 1<br>33%  | 2<br>67%  | 1<br>33%  | 3<br>100% | 0<br>0%   | 2<br>67%  | 1<br>33%  |
| 2억 원 이상  | 99        | 57        | 77        | 80        | 80        | 77        | 88        | 69        |
| 5억 원 미만  | 63%       | 37%       | 49%       | 51%       | 51%       | 49%       | 56%       | 44%       |
| 5억 원 이상  | 113       | 49        | 79        | 83        | 72        | 90        | 99        | 63        |
| 10억 원 미만 | 70%       | 30%       | 49%       | 51%       | 44%       | 56%       | 61%       | 39%       |
| 10억 원 이상 | 31<br>63% | 18<br>37% | 20<br>41% | 29<br>59% | 33<br>67% | 16<br>33% | 24<br>49% | 25<br>51% |
| 소계       | 245       | 125       | 178       | 193       | 188       | 183       | 213       | 158       |
| 합계       | 370       |           | 371       |           | 371       |           | 371       |           |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설계용역계약 내역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2.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 1) 설계공모 관련 주요 질의 내용<sup>8)</sup>

#### □ 실적제한 관련

- 일반설계공모 시 설계자의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을 추가하거나, 유사용역 실적을 갖춘 자로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안공모 시 일정한 실적을 갖춘 설계자로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안공모에서 담당건축사가 아닌 해당 업체에 소속된 다른 건축사의 유사용역 실적이나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도 되는지 여부

#### □ 설계공모 방식 관련

-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한 문의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설계공모를 적용할 때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별처 여부
-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 □ 설계공모 진행 관련

- 설계공모 시 공고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
- 공모 응모안이 다수일 경우, 단순 표결 또는 거수 등으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제출된 응모안이 없거나 1개일 경우 향후 발주 진행방식 문의

#### □ 설계공모 심사위원 관련

-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인력풀 제공 및 추천 가능 여부
- 실제 건축물 사용자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8) 설계공모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교수)과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타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제척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설계공모 참가자 제한 관련

- 진행 중인 건축사업의 동일부지에 별도의 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기준 사업의 참여업체(설계, 감리)가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 건축사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해당 지역 소재 건축사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 건축사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되, 전기·통신·소방 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의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건축 설계 이외의 용역을 포함하여 설계공모가 가능한지 또는 면허보완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설계공모 후 계약 관련

-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후속 조치 문의
- 설계공모에 공동도급으로 당선되었으나, 참여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후속 조치 문의
- 설계공모에 당선된 설계자와 계약 시 공고문에 명시한 설계비가 아닌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설계공모 당선자 확정 후 10일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설계공모 당선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차점자에게 설계권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변경 가능 범위 문의

#### □ 설계공모 이후 건립 부지 변경된 경우 향후 진행 방법

- 제안공모 응모작 제출 완료 후 심사 전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건립 부지가 변경된 경우 추후 설계공모 심사 및 공모 진행 방법 문의
-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건립부지가 변경된 경우 향후 진행방법 문의

## 2) 설계공모 개선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sup>9)</sup>

###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 (우선적용 대상 축소)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설계비 2억 원 이상)은 공모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장기화 및 소규모 업체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크므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 (우선적용 대상 확대) 설계공모는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이므로 현행 우선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건축기획 등 사전 업무 참여업체의 설계공모 참여 제한 여부

- 최근 일부 사례에서 건축기획, 기본계획, 사전기획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이전 단계에 참여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 및 당선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참여 제한 필요) 건축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 타 업체에 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정보와 혜안을 미리 파악하게 되고 공모지침 등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 제한 불필요) 건축기획 등에 참여한 업체의 공모 참여를 배제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며, 건축기획 등에 참여한 것이 설계공모에 유리하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획 등 참여업체의 공모참여 배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

- 현재 공식적인 심사위원 풀(pool)이 없는 상태에서 각 발주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풀(pool)을 구축하거나, 건별로 내·외부 추천 등을 통해 심사위원 풀(pool)을 선정한 다음 추첨 등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처럼 설계공모 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 필요
-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pool)을 발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 필요

---

9) 2016~2017년도에 진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현재는 발주기관 임직원이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심사위원이 7인인 경우 2인이 발주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 심사위원 제척, 회피, 기피 절차

- 현재 지침 상의 심사위원 제척, 회피 및 기피 규정에 따르면 응모자 제출 후 심사에 임박하여 제출 업체와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교체하게 되어 심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전공개 효과가 약화될 우려
-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공개하는 현행 방식을 고려하여 사전공개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회피, 기피 절차 보완 필요

#### □ 심사위원 참여 전문가

- (특수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 참여 허용) 건축물의 용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설계도서 해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한정) 특수 분야 전문가는 사업기획이나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심사위원 명단 사후 공개) 심사위원 명단은 공모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하지만 발주기관 등이 사전접촉, 로비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 발표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유지 필요)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는 공모 참여자에게 심사위원의 수준 및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의도 등을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접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단일안 응모 시 심사 허용

- 심사대상이 1개뿐인 경우, 재공모에 따른 사업일정의 지연 방지, 단독 참가 업체의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 및 아이디어 사장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해당 안을 심사하여 당선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1개 업체만이 공모에 참여하여 재공모가 아닌 다른 발주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 공모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필요

####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이후 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뒤늦게 파악한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마련 필요
- 또한, 표절이나 심각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 이후 발견한 경우에도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마련 필요
- 당선작 취소 이후 재 공모 실시 또는 차등작과의 계약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마련 필요

#### □ 심사결과 및 심사과정 공개 강화 및 확대

- 일부 기관에서 심사결과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공모안 및 그 평가사유서를 예외 없이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
- 최근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의 사전 이해 노력을 유도하고, 공모 참여 설계자의 입장에서도 공모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심사과정의 공개가 심사 운영 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결과 공개에 대한 발주기관 부담은 다소 커질 수 있으나, 선의 경쟁 유도 및 사후 구설수 방지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개 확대가 바람직함

#### □ 설계공모 보상

- 현재 발주기관이 대가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설계비와 달리 공모 보상비를 별도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침에서 설계비 감액을 통한 보상비 확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공고 시 감액 사유를 명시하는 등 방안 필요
- 입상자 수에 따라 보상비의 배분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회의 재량 부여 필요

#### □ 제출도서의 종류

- 설계도판은 심사의 충실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제출도서에 도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는 의견
- 설계설명서와 설계도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둘 중 하나는 제출 도서에서 제외할 필요

#### □ 제출도서의 표현 방식

- (3차원 표현 등 허용 필요) 많은 설계자가 3차원 툴을 활용하여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므로 3차원 표현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3차원 표현 금지 필요) 3차원 표현에 치중하여 과도한 설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외주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므로 3차원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주요 질의 내용<sup>10)</sup>

##### □ 경력 및 실적 산정 기준 및 인정 범위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인정 범위 중 공사감독 등 건축설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인정 여부
- 담당건축사 경력 산정 시 건축사 자격 취득 이전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당건축사 실적 산정 시 용역 종류, 규모, 금액 등의 세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방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문의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서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 실적 평가 시 해당 건축사의 이전 타 업체 근무 당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가능 여부

##### □ 참여건축사(보)의 실적관리 및 증명 등

-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관리 체계가 달라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방식에 대한 문의 다수

##### □ 업무중복도 평가 관련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업무중복도 평가 관련 조회·확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질의가 다수

---

10)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등)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sup>11)</sup>

### □ 실적 산정 시 최소 참여 기간 기준 적용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관하여 「건축 PQ기준」에서는 최소 참여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는 최소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 PQ기준」 [별지 1]에서는 용역규모에 따라 최소 참여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체 계약기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인정한다고 규정
- 현행 「건축 PQ기준」에서는 단 1일만 참여해도 한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최소 참여기간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 유사용역실적 산정기준 개선

- 복합용도 시설 증가, 기존 부지 내 관련 시설 증축 등을 감안하여 유사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해당 용도와 유사한 용도까지 확대할 필요
- 다만, 유사한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조달청 기준과 같이 해당 사업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건수로 평가하고,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

- (반대)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참여건축사 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삭제 필요
- (찬성) 공공건축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건축사(보) 평가 항목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 신용도 평가 기준 개선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소규모 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용도 평가 등급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을 참고하여 현재 고시금액 이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할 필요

---

11)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등)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 제도 개선 요구 사항과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 업무 중복도 평가 기준 개선

- 업무 중복도 산정 시 민간 프로젝트 포함 여부, 감리 등 설계 이외 업무 포함 여부 등이 발주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기준 구체화 필요
- 발주방식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발주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업무 중복도와 관련하여 확인 기관, 보증 기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증빙책 임이 설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크므로 관련 정보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공동도급방식에 대한 산정기준 개선

- 설계비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 소재 업체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특정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표업체와 참여업체의 평가를 차별화하는 방안 필요
- 보유 건축사보는 소규모 업체 간의 공동도급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표업체와 참여업체를 각각 평가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필요

#### □ 일부 기관에서 설계공모 수준의 제출물을 요구 및 평가하는 문제 개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에 따라 일정 규모와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 사업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면서 행정시설, 군사시설 등 일부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 규모가 대규모이고 특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에 일반설계공모에 준하거나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설계설명서를 요구하고, 전체 평점 중 상당 비중을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에 배정하고 있음
-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또한 해당 기관 임직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설계공모 안의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4. 설계발주방식 개선방향 도출

###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향

#### □ 제안공모 방식 도입취지 명확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시 설계안을 평가하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설계자를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서 제안공모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설계공모 방식으로 정착 및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
- 다만, 과도한 제출물 요구, 충분한 공모기간 미확보, 제안요청 과제 불분명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제안공모방식이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원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간이공모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 리모델링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설계 착수 전에 해당 설계업무의 범위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우선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설계자와 발주자, 그리고 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필요

#### □ 간이공모방식 도입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상당수의 설계공모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설계공모에 대한 발주기관과 참여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계 공모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요구
- 다만,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 방식의 원칙으로서 토론에 의한 심사,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법령의 적용 유지,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 방식과의 차별화 등을 유지할 필요
- 기존의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에 더하여 소규모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공모방식 도입 필요

#### □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현행 지침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공모나 지명공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설계공모 대상 확대에 따라 해외의 사례처럼 일정한 참가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Long-List 방식 또는 Short-List 방식 도입을 통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공모 참여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내실 있는 공모 심사를 위해 사업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는 안목을 보유한 심사위원 구성절차 및 방법 보완 필요
-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의 유지 여부 재검토를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 기타 개선 사항

-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으로 한정, 설계도판 금지, 과도한 3차원 표현 금지 등 현행 설계공모 제출물 관련 제한의 유연성 제고
-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유연성 제고, 당선자와의 계약 불능 시의 후속 조치, 당선 이후 사업내용 변경 등 심사 이후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 여부 및 개선사항 검토 필요
- 설계공모 대상 확대에 따라 단독응모 또는 유찰되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에 따른 발주기관 및 참가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기관 및 참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향

### □ 일부 불명확한 평가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이 많은 경력 및 실적 산정 기준, 참여건축사(보)의 실적 증빙 방식, 업무 중복도 산정 기준 시기, 별점 적용 업무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적격자 선정 결격 사유, 재평가 사유, 유사용역에 대한 최소참여기간 등 평가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한 규정 추가

### □ 신진 또는 소규모업체 참여 확대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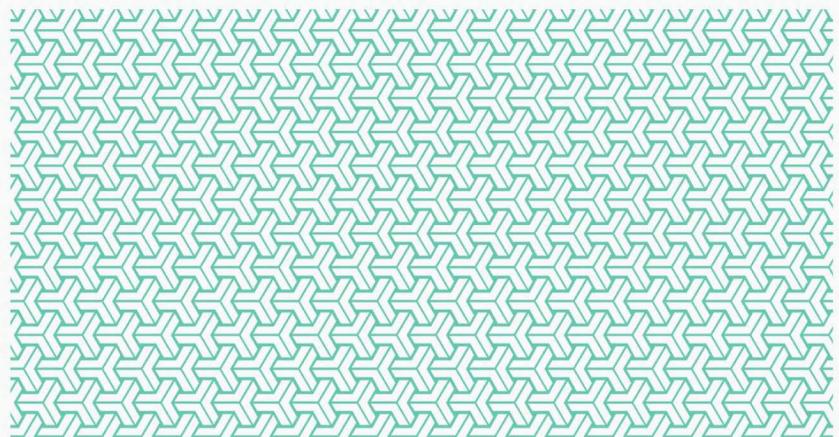
-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한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의 확대,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등급 간 점수 차이 축소 등 신진 및 소규모 건축사가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대표건축사로만 평가해 달라는 요청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2014년 제도 도입 시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최소한 건축사보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것이 설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임
  -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설계공모 대상으로 전환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

### □ 기타 개선 사항

-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도 평가 등급기준의 하향 조정 방안 마련
- 공동도급방식에서의 대표업체와 참여업체의 평가 차별화 방안 마련
- 일부 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설계공모 수준의 제출물을 요구 및 평가하는 문제 개선방안 마련



# 제4장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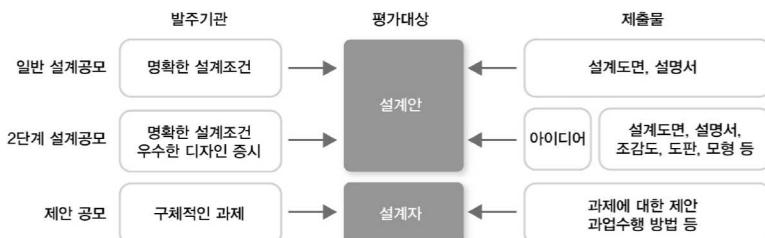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 1) 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 □ 제안공모방식의 도입 취지

- 제안공모방식은 기존의 일반설계공모나 2단계 설계공모와 같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설계자를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서 도입되었음
- 제안공모방식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설계 착수 전에 해당 설계업무의 범위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우선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설계자와 발주자, 그리고 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방식임



[그림 4-1]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특징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p.4.

### □ 제안공모방식 적용의 문제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제안공모방식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 등이 판단할 경우
- 제안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물을 간소화할 수 있고, 보상비(설계비의 10%)가 아닌 상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 지침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일반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기관이 원하면 어느 사업이든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안공모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원 취지인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설계공모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예산과 일정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간이공모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큼

#### □ 제안공모방식의 도입 취지 명확화 방안

-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도입된 제안공모방식의 원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민이나 관계자 등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계도면의 제출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설계공모의 간이형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공모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설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한 적절한 제안요청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제안요청 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2) 간이공모방식 도입

### □ 간이공모방식의 적용 대상

- 간이공모방식은 제안공모방식의 적용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설계공모와 구분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에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됨
- 간이공모 방식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발주 기관 및 설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방식이므로 간이공모 방식의 적용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 간이공모방식의 일정

- 일반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 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제안공모는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간이공모의 일정은 일반설계공모와 제안공모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규정
- 아울러 간이공모 방식 도입에 따라 일반설계공모에서의 일정 단축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당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을 단축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간이공모로 대응이 가능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간이공모방식의 제출물

- 일반설계공모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타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안공모는 도면제출을 금지하면서 포트폴리오와 과업수행계획서로 한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이공모방식은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설계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  
이므로 설계도면은 제출물에 포함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이  
라는 점과 설계자의 참가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설계도면 이외에는 일  
체의 제출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간이공모방식의 보상비용

- 일반설계공모는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제안공모는 소정의 보상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금 수준의  
급액이 지급되고 있음
- 간이공모는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제출물은 간소화하였으나 설계도면은 제  
출받으므로 제안공모처럼 소정의 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기에는 부족할 것  
으로 판단되며, 지침에서 일정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발주기관과 참여자에  
게도 바람직할 것임
- 간이공모의 대상이 설계비 2억 원 정도 미만의 사업이므로 일반설계공모  
처럼 보상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예정설계비의 5%에 해당하  
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표 4-1] 설계공모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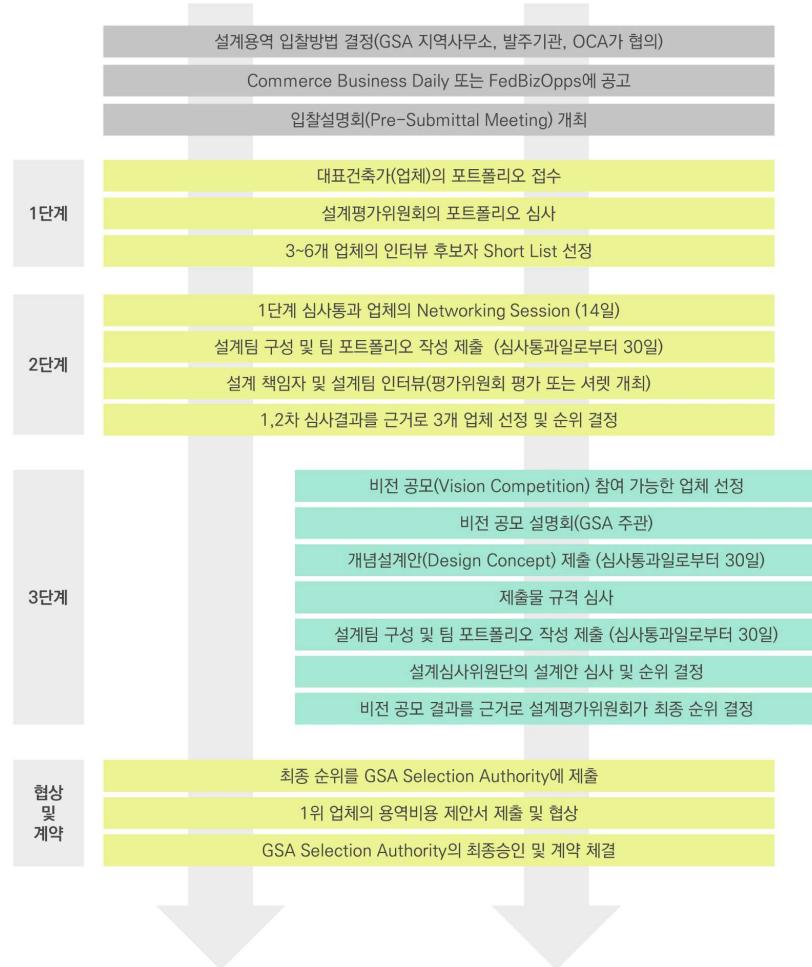
| 구분         | 일반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간이공모   | 제안공모  |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   |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br>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br>3.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 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 |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민·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
| 공고일~제출 마감일 | 90일 이상<br>(다만, 당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 90일 이상<br>(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 30일 이상   | 20일 이상  |
| 공고일~등록마감   | 7일 이상  | 7일 이상  | 5일 이상  | 5일 이상   |
| 제출물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br>(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 가능) | 2차공모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 지급)   | 설계도면 (그 외 일체의 추가자료 요구 금지)                                    | 포트폴리오, 과업수행계획서 (설계도면, 조감도 등 금지)   |
| 평가대상       | 설계안  | 설계안  | 설계안  | 설계자의 경험 및 실적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  |
| 보상비용       | 설계비의 10%<br>(한도 1억원)   | 설계비의 10%<br>(한도 1억원)   | 설계비의 5%  | 소정의 상금  |

※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 미국과 일본의 Short-List 방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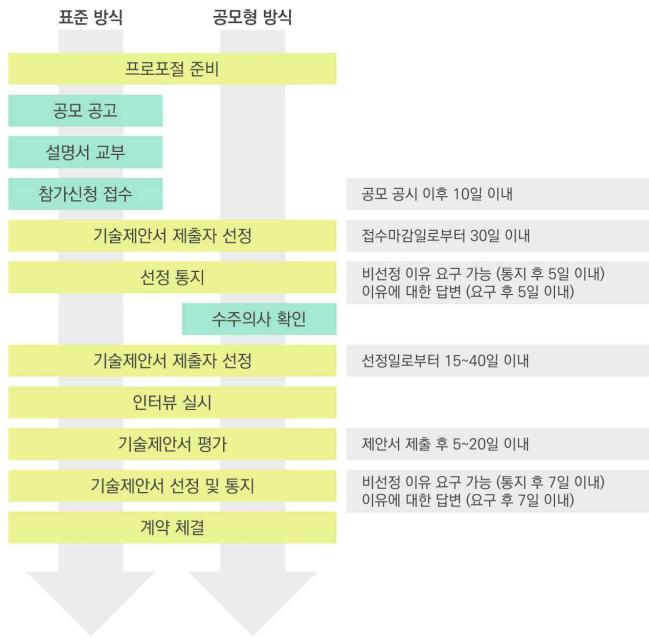
- 미국 GSA PBS(Public Building Service)의 설계자 선정방식인 Design Excellence Program에서는 1단계 포트폴리오 심사와 2단계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정하거나 일부 2단계까지를 통과한 업체(Short-List)를 대상으로 3단계 비전공모를 실시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게 됨



[그림 4-2]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절차

※ 출처 : 김예상(2005),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보문당, p.74. ; 염철호·임유경(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3. (재인용)

- 일본 국토교통성의 설계자 선정방식인 프로포절 방식은 1단계에서 참가의향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제출자(Short-List)를 선정한 다음,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게 됨



[그림 4-3]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 출처 : 염철호·임유경(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7.

- 두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Short-List를 작성한 후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만이 다음 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됨
- Short-List 방식은 1차적으로 설계자의 포트폴리오나 참가의향서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1단계 심사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Short-List에 포함될 경우 당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음

## □ Long-List 방식 & Short-List 방식 도입방안 검토

- 설계공모 참여 설계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용 기간에 따라 Long-List 방식과 Short-Lis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Long-List 방식
  - 설계공모 참가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연간 또는 2년간 해당 기관의 설계공모 참가 자격 부여

(절차) Long-List 작성을 위한 사전 공모 진행(포트폴리오 심사 또는 아이디어 공모) → 심사를 통해 Long-List 작성 → 설계공모 공고(Long-List 해당자로 제한) → 설공모안 제출 → 심사 → 계약

- Short-List 방식
  - 개별 건에 대하여 설계공모 참가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해당 기관의 설계공모 참가 자격 부여

(절차) 설계공모 공고 → 개별 사업별 참가의향서 징구 → 심사를 통해 Short-List 작성 → 설계공모안 제출 → 심사 → 계약

- Long-List & Short-List 방식
  - 설계공모 참가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연간 또는 2년간 해당 기관의 설계공모 참가 자격 부여한 후, 개별 건에 대한 설계공모 진행 시 다시 참가 의향서를 제출 받아 설계공모 참가 자격 부여

(절차) Long-List 작성을 위한 사전 공모 진행(포트폴리오 심사 또는 아이디어 공모) → 심사를 통해 Long-List 작성 → 설계공모 공고 → 개별 사업별 참가의향서 징구 → 심사를 통해 Short-List 작성 → 설계공모안 제출 → 심사 → 계약

- Long-List 방식이나 Short-List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회성으로 해당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Long-List 방식과 Short-List 방식을 통해 참가자격만 제한하고 일반설계공모와 마찬가지로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채용한다면 간이공모방식으로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음
- PBS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에서는 2단계에서의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인터뷰 심사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공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함
- 이로 인해 사전심사를 통해 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해당공모에 대한 심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가 됨

- 또한 Long-List 방식과 Short-List 방식을 통해 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참가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업체는 특정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타 지역 업체나 대규모 또는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규정 상 Long-List 방식 & Short-List 방식을 간이공모방식으로서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절차나 근거가 다소 미흡한 제한공모방식 또는 지명공모방식을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 □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적용절차 구체화 방안

- 현재 지침에서는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근거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제한공모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필요
-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초청 지명공모와 사전 자격심사 지명공모로 구분하여 초청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전 자격심사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사전 자격심사를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필요
  - 지명공모에 대해서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 4)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 심사위원 추천 절차 마련

- 내실 있는 공모심사를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을 보유한 심사위원 구성이 중요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풀로 한정하여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관행이 여전
-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 위원 추천 및 선정을 포함하여 설계공모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운영위원회 도입 근거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별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설계지침서 등을 포함한 기획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이므로 운영위원회 와 일부 역할이 중복될 우려
- 따라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위원 추천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추천하거나 심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 심사위원 제척 · 기피 · 회피 절차 구체화<sup>12)</sup>

-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참여할 경우 심사에 임박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하거나, 이해관계 정도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불충분하여 현장의 혼란 다수 발생
-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개된 심사위원 중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모 마감 이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기한 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경우 관련 사실 확인 시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 이후라도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하는 등 제재 조치 적용
- 아울러 제척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심사위원 선정 규모를 현행 심사위원 수의 20% 내외에서 30% 내외로 확대

---

12) 일부 지침에 대한 질의 사항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행 심사위원 제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규정과 유사한 수준이며, 구체화 정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 □ 건축 설계 이외 분야 전문가 및 발주기관 임직원의 심사위원 참여 비율 축소

- 현행 지침 상 심사위원은 건축·도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나 교수를 위주로 하되,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발주 기관의 임직원이 전체 위원수의 30% 내에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심사위원 수를 5~9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반수가 참석하면 심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건축 설계 분야 이외의 전문가나 발주기관 임직원이 설계공모 심사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총 7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 자격을 갖춘 발주기관 임직원은 2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만일 1인의 외부심사위원이 당일 불참하는 경우 외부 4인과 내부 2인으로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문제
- 심사위원에 건축 설계 분야 이외의 전문가나 발주기관의 임직원 참여를 일부 허용한 것은 건축 설계 이외 전문 분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이므로 심사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발주기관의 임직원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것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전체 위원수의 30%내 제한 범위를 20%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

## 5) 기타 개선 사항

### □ 제출도서 관련 규정 유연성 제고

-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설계도판 및 과도한 3차원 이미지 등의 제출을 금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출도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특성에 따라 제출도서의 범위에 대한 논란 및 개정요구가 지속

- 디지털 심사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도판을 제출도서에 포함
- 일반설계공모 등에서 요구하는 설계설명서에 대한 무용론 제기 설계자도 다수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에 대한 해석 모호 및 3차원 이미지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지속

- 설계공모 의무화 후 상당기간 경과, 설계공모 대상 확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도입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사업특성 등에 따라 제출도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 □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유연성 제고

- 현행 지침에서는 기타 입상자를 4인 이내로 선정하고, 기타 입상자 수에 따라 보상비 지급 규모를 정하고 있음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보상비 지급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부여

### □ 단독응모 시 후속 절차 보완

- 단독응모로 심사대상이 1개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응모 업체의 경제적 손실 및 발주기관의 부담 가운데 대한 문제 다수 제기
- 단독응모 이후 재공모가 아닌 입찰 등 다른 방식의 발주를 하는 경우 단독응모업체에게 참가비용 보상
- 단독응모에 따른 재공모 시 발주기관 및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제출물 간소화 및 공모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 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일부 개선 및 구체화

- 현행 지침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계공모 참가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으며, 계약 미 체결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은 삭제하고 임의규정으로 개정
- 또한, 당선자와의 계약 불능 발생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시 기타 입상자 중 차순위의 계약상대자의 결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 마련

##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 ① 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도입된 제안공모방식의 원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리모델링 사업” 등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며, 이외에 “주민이나 관계자 등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
- 또한, 설계도면의 제출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설계공모의 간이형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함

[표 4-2]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br>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br>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br>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br>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br>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br>② (생략) | ① (현행과 같음)<br>1. (삭 제)<br>1. ----- 및 차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리모델링 사업인 경우<br>2. 사용자(관계자)나 타공종 전문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br>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37조(제안요청 과제)      |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 제38조(제출도서 등)       |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_____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br>②, ③ (생략)  | ① -----<br>----- 아이디어 -----<br>--하며 상세한 설계도면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br>②, ③ (현행과 같음)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② 간이공모방식 도입

- 공모 기간은 일반설계공모와 제안공모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 간이공모방식은 일반설계공모와 마찬가지로 설계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설계도면은 제출물에 포함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과 설계자의 참가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설계도면 이외에는 일체의 제출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표 4-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간이공모방식 도입)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 1. ~ 6. (생 락)<br>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 1. ~ 6. (현행과 같음)<br>7. "간이공모"라 함은 공모기간, 제출도서 등을 간소화하여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br>8.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8. ~ 13. (생 락)   | 9. ~ 14. (생 락)  |
| 제29조(간이공모 〈신 설〉의 적용대상) | ① 발주기관들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_____ 및 제안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br>② ~ ④(생 락)  | ① -----<br>-----<br>---, 간이공모-----<br>-----<br>② ~ ④(현행과 같음)  |
| 제30조(일정) 〈신 설〉         |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① 발주기관들은 당해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br>②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들은 설계공모 공고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 제31조(제출도서 〈신 설〉)       |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으로 한정한다.<br>② 설계설명서, 조감도, 모형, 3차원이미지 등을 제출도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설계설명서, 조감도, 모형, 3차원이미지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거나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제32조(평가) 〈신 설〉         | 간이공모의 평기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간이공모의 평기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3조(공모비용 〈신 설〉의 보상)   | ① 발주기관들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기타 입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br>② 그 밖에 공모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발주기관들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기타 입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br>② 그 밖에 공모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③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제한공모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표 4-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① (생 략)<br>② 발주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br>1. ~ 3. (생 략)<br>③ 발주기관들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1. ~ 3.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 1.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br>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1. ~ 2. (현행과 같음)  |
|               |   | ④ 제한공모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br>⑤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
|               | ④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④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 심사위원 추천 절차 규정

-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추천하거나 심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절차 마련

- 또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자문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도록 근거 마련

[표 4-5]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사위원 추천 근거)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p>①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15 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p> <p>②~⑨(생략)</p> | <p>① 발주기관들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공모별로 심사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추천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p> <p>1. 발주기관들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당 총괄건축가가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p> <p>② 발주기관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서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자문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사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이하, 같은 조 1항부터 9항을 3항부터 11항으로 한다.)</p>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심사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 절차 구체화

-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 전에 기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비하여 예비심사위원 선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표 4-6]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사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절차 구체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p>① ~ ④ (생 략)<br/>           ⑤ (생 략)<br/>           가. ~ 바. (생 략)</p> <p>⑥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 <p>① ~ ④ (현행과 같음)<br/>           ⑥ (현행과 같음)<br/>           가. ~ 바. (현행과 같음)</p> <p><u>⑦ 설계공모 참가자는 해당 심사위원이 제5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해당 심사위원이 제5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u></p> |
|                 | <p>⑦ 심사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악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⑧ 발주기관들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p>                                 | <p><u>⑧ 심사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⑨ (현행과 같음)</p>  |
|                 | <p>⑨ 발주기관들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p>   | <p>⑩ -----<br/>           -----30퍼센트-----<br/>           -----<br/>           -----<br/>           -----<br/>           -----</p>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건축설계 이외 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참여비율 축소

- 심사위원에 건축 설계 분야 이외의 전문가나 발주기관의 임직원 참여 허용 비율을 현행 전체 위원수의 30%내에서 20%내로 축소

[표 4-7]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건축설계 이외 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참여비율 축소)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심사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 | <p>① ~ ③ (생 략)<br/>           ④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p> | <p>① ~ ③ (현행과 같음)<br/>           ④ -----<br/>           ----- 20% -----<br/>           -----.</p> |
|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출처 : 연구진 작성

## ⑤ 기타 개선 사항

### □ 제출도서 관련 규정 유연성 제고

- 일반설계공모에 한하여 제출도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과도한 제출도서를 요구하거나 설계자가 과도한 제출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

[표 4-8]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출도서 관련 규정 유연성 제고)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제출도서 등) | <p>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회가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 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을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 <p>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회가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 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u>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도서 기준을 어길 시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여야 한다.</u></p>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유연성 제고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비 지급 기준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부여

[표 4-9]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 유연성 제고)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 <p>① ~ ② (생략)</p> |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여지급할 수 있다.</p> <p>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절수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p> <p>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절수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p> <p>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절수</p> |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을 지급

④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입상자 수에 따라 각 호에서 규정한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  
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을 지급

④(생 략)

⑤(현행과 같음)

※ 출처 : 연구진 작성

#### □ 단독응모 시 후속 절차 보완

- 단독 응모 후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응모자를 기타 입상자로 보고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의 공모비용 보상 기준을 적용
- 또한, 재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모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표 4-10]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단독응모 시 후속 절차 보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공모안의 제출)<br>① ~ ④(생 략)<br>⑤(신 설) | ① ~ ④(현행과 같음)<br><br>⑤ <u>발주기관들은 재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설계<br/>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의<br/>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u> |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일부 개선 및 구체화

- 당선자와의 계약 불능 발생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시 기타 입상자 중 차순위의 계약상대자의 결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 완화

[표 4-11]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일부 개선 및 유연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당선작 등 ①(생 락)<br>입상작 선정)  |  |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발주기관등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안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타 입상작 중 차순위 계약 대상자의 순위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u></p> |
|                               | ② ~ ④(생 락)   | ③ ~ ⑤(현행과 같음)   |
| 제36조(계약상대<br>자 결정 및 계약체<br>결) | ① ~ ③(생 락)<br>④ _____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br>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br>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br>야 한다. | ① ~ ③(현행과 같음)<br>④ <u>발주기관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
|                               | ⑤~⑥(생 락)   | ⑤~⑥(현행과 같음)   |

※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 1)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 □ 적격자 선정 결격에 관한 사항 추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건축 PQ기준)과 달리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하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는 적격자 선정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조달청 건축 PQ기준」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에서는 총 8가지의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
  -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신청서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건축 PQ기준」의 경우, 제7조제4항에서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결격사유 규정 필요
- 「조달청 건축 PQ기준」 제7조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되, 조달청의 입찰 시스템 등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은 조정
-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결격 사유
  -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서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요구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를 평가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 재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건축 PQ기준」에서는 재평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없으나,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는 별도의 재평가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
- 「조달청 건축 PQ기준」 제10조(재평가)에서는 총 3가지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
  -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 평가결과 공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재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 「조달청 건축 PQ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되, 일부 사항은 조정
- 재평가 사유
  - 제5조제4항에 따라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업체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보유건축사(보)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보)를 제외하고 재평가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당해 사실을 확인 후 재평가

#### □ 설계설명서 등 요구 및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과도한 조정 제한

- 「건축 PQ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세부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는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항목별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하고,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급 간 차이는 축소만 허용
- 또한, 설계공모 제출물과 유사한 설계설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투시도, 조감도, 모형 등을 요구하거나, 설계안과 관련한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

#### □ 공동도급 시의 평가점수 계산방식 개선

- 「건축 PQ기준」 제8조제5항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은 대표업체만 평가하도록 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실적, 신용도는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가 참여업체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소규모 업체 간의 공동도급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참여 업체 각각의 보유 건축사(보)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표 4-12]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① (생 락)<br>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u><br>③ ~ ④ (생 락) |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u>1.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배점은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u><br><u>2. 항목별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u><br><u>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등급간 격차는 축소만 가능하다.</u><br>③~④ (현행과 같음)   |
|                  |   | ⑤ 발주기관은 입찰참여업체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투시도, 조감도, 모형 등을 요구하거나, 설계안과 관련한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여서는 안된다.  |
|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 ⑥ ~ ⑦ (생 락)   | ⑥ ~ ⑦ (생 락)   |
|                  |   | ①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br>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격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br>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br>2. 미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br>3. 서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br>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br>5.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요구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br>제1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br>6. 설계비 총점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를 평가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br>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 ④(생략)

①~④(현행과 같음)

- 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 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응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 ⑥ -----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담당건축사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한다.
  2.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3.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보유 건축사(보)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응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업체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보유건축사(보)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건축사(보)를 제외하고 재평가
  4.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당해 사실을 확인 후 재평가

---

※ 출처 : 연구진 작성

## 2)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사항

### □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사업의 참여건축사(보) 평가항목 유지 여부 검토

- 2015년 현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1,155개 업체 중 종사자가 1~4명인 업체가 8,320개로 전체의 75%를 차지<sup>13)</sup>
-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전체 증가율이 1.48배인 것에 비해 1~4명인 업체의 증가율은 1.64배에 달하고 있어 종사자 1~4인의 소규모 업체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sup>14)</sup>
- 2014년 「건축 PQ기준」 제정 당시에는 설계비 고시금액 미만 건축물의 설계 중 많은 경우가 PQ 방식으로 발주됨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

[표 4-13] 「건축 PQ기준」의 참여건축사(보) 경력·실적 평가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
|------|----|--------|-------|-------|-------|
| 경력   | 10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10     | 9     | 8     | 7     |
| 실적   | 5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 5      | 4.5   | 4     | 3.5   |

※ 출처 : 「건축 PQ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제도 도입 이후 다수의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사업에 대한 PQ 적용 제외 또는 참여건축사(보) 평가 제외를 요청
-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20.01.16.)되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이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PQ 방식 적용 건수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의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민원 제기와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
  - 건축사에 비해 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자기신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뢰성 담보 문제 제기
  - 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도 발주기관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 다만, 2014년 기준 제정 당시 공공건축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이라도 최소한 일정 경력과 실적을 갖춘 참여

13) 서수정·유제연(2017),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0.

14) 상계서, p.50.

건축사(보)를 두고 있는 업체가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달청 PQ기준」에서도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항목을 두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업체의 인력 확보 노력도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
- 따라서 기준 제정 당시의 취지와 기준 개정에 따른 업체의 혼란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관리의 개선과 함께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항목 유지여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소규모 설계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관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 제시

#### □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사업의 담당건축사 평가등급 점수 차이 축소

- 「건축 PQ기준」에서는 설계비 규모와 상관없이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서 등급 간 10%씩 점수 차이를 두고 있음

[표 4-14]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평가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       |
|------|----|--------|-------|-------|-------|-------|
| 경력   | 25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25     | 22.5  | 20    | 17.5  | 15    |
| 실적   | 20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 20     | 18    | 16    | 14    | 12    |

※ 출처 : 「건축 PQ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이를 1점으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신진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표 4-15] 「조달청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평가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       |
|------|----|--------|-------|-------|-------|-------|
| 경력   | 25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25     | 24    | 23    | 22    | 21    |
| 실적   | 20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 20     | 19    | 18    | 17    | 16    |

※ 출처 : 「조달청 건축 PQ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에 대한 신진건축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현행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의 점수 차이를 「조달청 건축 PQ기준」 수준으로 조정

□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사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하향 조정

-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는 소규모 설계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BBB- 이상(회사채의 경우)에 만점을 부여
-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도 설계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BBB0 이상(회사채의 경우)에 만점을 부여
- 유사 PQ기준의 사례를 고려하여 「건축 PQ기준」에서도 신용평가등급을 하향 조정

□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표 4-16]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평가항목                                 |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
|--------------------------------------|----|----|---------------------|---------------------|--------------------|---------------------|
| 담당건축사                                | 경력 | 25 | 12년 이상<br><u>25</u> | 9년 이상<br><u>24</u>  | 6년 이상<br><u>23</u> | 3년 이상<br><u>22</u>  |
|                                      | 실적 | 20 | 10건 이상<br><u>20</u> | 8건 이상<br><u>19</u>  | 6건 이상<br><u>18</u> | 4건 이상<br><u>17</u>  |
| 참여건축사<br>(보)                         | 경력 | 10 | 6년 이상<br><u>10</u>  | 4년 이상<br><u>9</u>   | 2년 이상<br><u>8</u>  | 2년 미만<br><u>7</u>   |
|                                      | 실적 | 5  | 6건 이상<br><u>5</u>   | 4건 이상<br><u>4.5</u> | 2건 이상<br><u>4</u>  | 2건 미만<br><u>3.5</u> |
| 담당건축사의<br>유사용역 수행실적                  |    | 20 | 5건 이상<br>20         | 4건<br>18            | 3건<br>16           | 2건<br>14            |
|                                      |    |    |                     |                     |                    | 1건 이하<br>12         |
| 신용도<br>(입찰참가 제한 및 별<br>점)            |    | 10 | 0.1점이상<br>0.2점미만    | 0.2점이상<br>0.5점미만    | 0.5점이상<br>1.0점미만   | 1.0점이상<br>1.5점미만    |
|                                      |    |    | -0.2                | -0.5                | -1                 | -2                  |
| 업무 중복도<br>(담당건축사(6),<br>참여건축사(보)(4)) |    | 10 | 100% 미만<br>6(4)     | 100~<br>5.4(3.6)    | 150~<br>4.8(3.2)   | 200~<br>4.2(2.8)    |
|                                      |    |    |                     |                     |                    | 250% 미만<br>3.6(2.4) |

※ 출처 : 연구진 작성

□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표 4-17]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평가항목                            |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
|---------------------------------|--------------------------------------|----|----------------------------|----------------------------|------------------------------|--------------------------|
| 담당건축사                           | 경력                                   | 18 | 12년 이상<br>18               | 9년 이상<br>16.2              | 6년 이상<br>14.4                | 3년 이상<br>12.6            |
|                                 | 실적                                   | 12 | 10건 이상<br>12               | 8건 이상<br>10.8              | 6건 이상<br>9.6                 | 4건 이상<br>8.4             |
| 참여건축사<br>(보)                    | 경력                                   | 12 | 12년 이상<br>12               | 9년 이상<br>10.8              | 6년 이상<br>9.6                 | 3년 이상<br>8.4             |
|                                 | 실적                                   | 8  | 10건 이상<br>8                | 8건 이상<br>7.2               | 6건 이상<br>6.4                 | 4건 이상<br>5.6             |
| 보유 건축사(보) 현황                    | 현황                                   | 10 | 10점 이상<br>10               | 8점 이상<br>9                 | 6점 이상<br>8                   | 4점 이상<br>7               |
|                                 |                                      |    |                            |                            |                              | 4점 미만<br>6               |
| 업체의<br>유사용역 수행실적 <sup>15)</sup> |                                      | 20 | <u>500% 이상</u><br>20       | <u>400% 이상</u><br>18       | <u>300% 이상</u><br>16         | <u>200% 이상</u><br>14     |
|                                 |                                      |    |                            |                            |                              | 200% 미만<br>12            |
| 신용도                             | 입찰참가<br>제한<br>및 별점                   | 7  | 0.1점이상<br>0.2점미만<br>-0.2   | 0.2점이상<br>0.5점미만<br>-0.5   | 0.5점이상<br>1.0점미만<br>-1       | 1.0점이상<br>1.5점미만<br>-2   |
|                                 | 신용등급<br>(회사채)                        | 3  | <u>BBB- 이상</u><br><u>3</u> | <u>B- 이상</u><br><u>2.7</u> | <u>CCC+ 이하</u><br><u>2.4</u> | <u>미제출</u><br><u>2.1</u> |
|                                 | 업무 종복도<br>(담당건축사(6),<br>참여건축사(보)(4)) | 10 | 100% 미만<br>150% 미만<br>10   | 100~<br>150% 미만<br>9       | 150~<br>200% 미만<br>8         | 200~<br>250% 미만<br>7     |
| 250% 이상<br>6                    |                                      |    |                            |                            |                              |                          |

※ 출처 : 연구진 작성

15)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사항에서 기술

###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사항

####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

- 「조달청 건축 PQ기준」을 참고하여 최소참여기간을 설정하고, 최소참여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용역규모(추정가격)가 고시금액 미만 : 60일 이상
  - 용역규모(추정가격)가 고시금액 이상 : 120일 이상
-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로 판단되는 문구 삭제
  - “③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 다.”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 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문구 삭제

#### □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방법

- 「건축 PQ기준」에서는 유사용역실적을 해당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서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로 규정
  - 건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는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적용
  -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해당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
  -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
- 현행 「건축 PQ기준」에서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건축설계 수행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
- 또한, 「조달청 건축 PQ기준」에서 설계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신진 업체의 경우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

- 또한, 설계비 규모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건수가 아닌 기준비율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한 실적 등을 고려하면서 설계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됨
- 따라서 「조달청 건축 PQ기준」을 준용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개정
  - (설계비 고시금액 이상 용역) 해당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
  - (설계비 고시금액 미만 용역)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절대 평가
-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로 판단되는 문구 조정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의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를 “해당 사업 연면적”으로 조정
  - “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의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를 “해당 사업 연면적”으로 조정

#### □ 신용도 평가 방법

-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관련 사항 조정

#### □ 업무 중복도

-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을 공고일이 아닌 착수예정일로 수정하고, 업무 중복도 평가 대상 사업을 공고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용역으로 제한
- 업무 중복도에 해당하는 용역의 범위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명확히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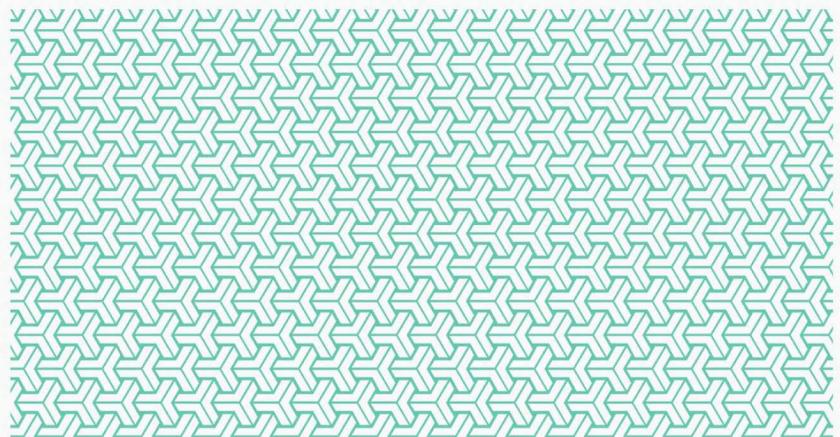
## □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안

[표 4-18]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구분                                 | 현 행   | 변경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담당건축사, 참여<br>건축사(보)의 경력<br>및 실적 | <p>①~②(생 략)</p> <p>③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p>   | <p>①~②(생 략)</p> <p>③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p> <p>④ 각 실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참여기간을 초과한 용역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간이 최소참여 기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 전체 용역기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p> <p>1. 용역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60일<br/>2. 용역규모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 120일</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담당건축사 또는<br>업체의 유사용역수<br>행실적    | <p>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p> <p>② ①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p> <p>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p> | <p>①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p> <p>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관계 없이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p> <p>②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준비율 (%)=(업체의 최근 5년간 해당 용도 실적 연면적 합계 / 해당 용역 발주 연면적)×100)</p> <p>④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도                             | <p>① ~ ②(생 략)</p> <p>③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br/>BBB-이상</td> <td>BBB-미만<br/>B-이상</td> <td>CCC+<br/>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br/>A3-이상</td> <td>A3-미만<br/>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br/>BBB-이상</td> <td>BBB-미만<br/>B-이상</td> <td>CCC+<br/>이하</td> </tr> </table> <p>④ ~ ⑤(생 략)</p>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br/>B-이상</td> <td>CCC+<br/>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br/>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br/>B-이상</td> <td>CCC+<br/>이하</td> </tr> </table> <p>④ ~ ⑤(현행과 같음)</p>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업무 종복도                          | <p>① 업무 종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증인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종복기간 산정한다.</p>  | <p>① 업무 종복도는 최초예정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에 적용하며, 공고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증인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종복기간 산정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연구진 작성

#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1. 연구의 성과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시행 예정
- 2014년 이후의 설계발주 관련 조달청 계약 현황, 2016년 건설공사 통계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은 연간 1,1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디자인 경쟁력이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설계안이 구현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공모 확대는 디자인 경쟁력이 영향을 끼치는, 설계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성장하는 계기가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에 발주기관의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부감 가중 문제, 건축사사무소의 지역 편중에 따른 설계공모 참여 업체 수의 격차 문제 심화 문제,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도 필요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14.06) 이후의 설계공모 운영실태

- 조달청 나라장터의 설계용역 계약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5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발주된 설계공모 중 3,147건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운영 실태를 분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맞추어 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통해 새로운 설계공모방식으로 '제안공모'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점차 일반화된 설계공모방식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착·확산되고 있음
- 우수한 설계안 선정, 설계공모의 공정성, 참여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충분한 공모기간 및 보상비 확보,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제출물 간소화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실제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 설계공모방식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방안

- 제안공모는 설계 착수 전에 설계업무의 범위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우선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설계자와 발주자, 그리고 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는 방안 제시
  -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리모델링 사업” 등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며, 이외에 “주민이나 관계자 등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
  - 또한, 제안공모에서는 설계도면의 제출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설계 공모의 간이형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에 더하여 소규모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공모방식 도입 방안 제시
  - 적용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한정
  - 설계공모 일정은 일반설계공모와 제안공모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하여 공고일로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는 30일 이상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규정
  - 설계도면은 제출물에 포함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과 설계자의 참가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설계도면 이외에는 일체의 제출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일반설계공모처럼 보상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예정설계비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모 보상비로 확보하도록 규정
- 현행 지침에서 특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공모와 지명공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 제시
  - 제한공모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제한 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 지명공모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지명 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심의사항을 구체화
-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 추천 절차,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 임직원 등의 심사위원 참여 비율 조성 방안을 제시

-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추천하거나 심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절차 마련
-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 전에 기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 심사위원에 건축 설계 분야 이외의 전문가나 발주기관의 임직원 참여 허용 비율을 현행 전체 위원수의 30%내에서 20%내로 축소
- 일반설계공모에 한하여 제출도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과도한 제출도서를 요구하거나 설계자가 과도한 제출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비 지급 기준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부여
- 단독 응모 후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응모자를 기타 입상자로 보고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의 공모비용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모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당선자와의 계약 불능 발생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시 기타 입상자 중 차순위의 계약상대자의 결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안 제시
  - 적격자 선정 결격에 관한 사항 추가
  - 재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실적 평가 시 최소 참여기간기준 설정
- 일부 기관에서 변칙적으로 설계공모에 준하는 제출물을 요구하고 내부 임직원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설명서 등의 요구 및 평가를 금지하고,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과도한 조정을 제한
- 소규모 설계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방안 제시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의 점수 차이를 「조달청 건축 PQ기준」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의 만점기준도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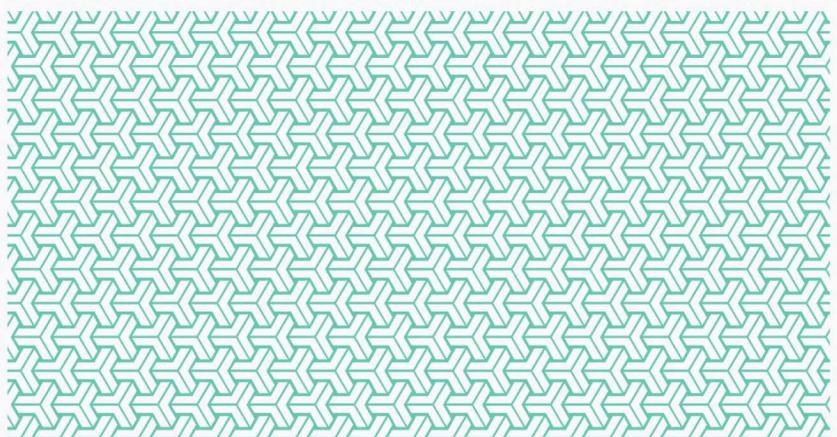
- 건축설계 업체의 현실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사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하향 조정 방안 제시
  - 신용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BBB- 이상(회사채의 경우)에 만점을 부여
-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식을 용역비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제시
  - 설계비 고시금액 이상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
  - 설계비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절대 평가
-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을 착수예정일로 하고,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 사업을 공고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명확화 하는 방안 제시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본 연구는 '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설계발주제도가 적용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설계발주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3,000건이 넘는 설계발주 사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한 다음, 설계공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항목별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음
- 하지만 유찰로 인한 재공고 사례, 공고 취소 사례, 공고자료 등이 일부 누락된 사례 등을 제외하는 등 분석 대상을 추출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개별 발주사례별 공모 공고문, 제안요청서, 공모지침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파악이 가능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 초기에 설정한 심층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개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그침
-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공모 등 나라장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공모 건수도 상당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 등에 관한 충실한 정보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설계발주에 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대응을 위하여 간이공모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설계공모 방식 개선방안과 그간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 되었던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행 제도 분석, 그간의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민원 및 질의 내용 검토, 설계업체 등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조달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설계발주제도 관련 담당자, 설계 관련 학·협회, 설계업체 등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검증과 대안 제시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방안이 실제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적용 가능성, 우려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References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김예상(2005),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보문당.

서수정·유제연(2017),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임유경(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조달정보개방포털 <http://data.g2b.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865호, 2013. 6. 4.,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건축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호, 2017. 12. 19.,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일  
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  
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일부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 4. 30., 일부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지침 제1735호, 2019. 3. 25.,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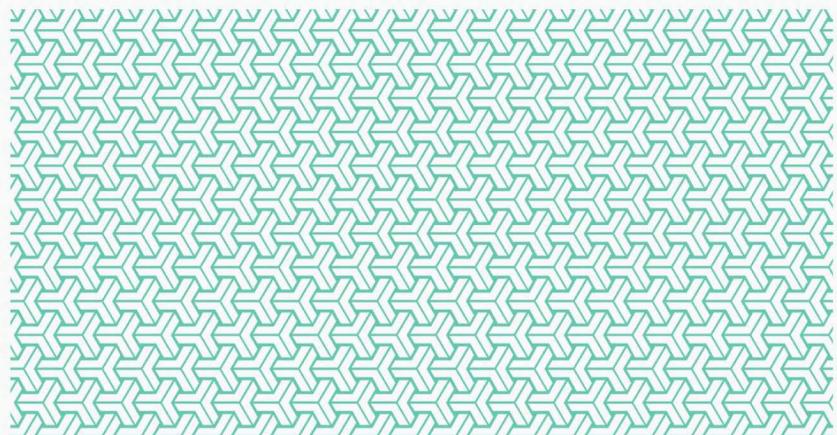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  
2019. 4. 10., 일부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346호, 2017. 6. 2., 일부개정]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1824호,  
2018. 3. 30., 일부개정]

#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Public Building Design Procurement Methods



Youm, Chirlho

Park, Seokhwan

Lee, Hyew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sses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esign order system introduced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in 2014 to draw out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design order system, and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design order system, which is newly introduced,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design recruitmen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limited to the method of design public offering and the method for assessing project performance as specifi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and the method of qualification or private contract applied to small businesses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In addition,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excluded from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atch bidding methods applied to large-scale projects.

The main opinions of the official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 public offering system included the appropriate scope of the priority application of the design public offering, whether or not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pre-work such as architectural planning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design contest,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judges, supplementing the screening, granting of judges,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unfair practices,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disclosure of the screening process, and presentation methods of the submission draft. The key opinions of the concerned parties regarding the assessment method of project performance include application of the minimum participation period criteria,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similar service performance, approval and approval of the participation architects' experie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lowering the criteria for creditworthiness assessment, unifying different task redundancy assessment criteria for each ordering institution, improving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the joint delivery method, and improving the requirements for appropriate level of submission and assessment issues.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design ordering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bove system status and survey of the status and collecting opinions of the officials.

The design public offering method proposed to clarify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roposed public offering only to projects that are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r task of the design work, such as remodeling projects or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or that need to first select designers, order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design work.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public offering method that could be applied with

minimal submission and duration of public offering for small projects. In addition, limited public offerings and nominating contests were reviewed by simplifying the process of public offering or lowering the cost of participation by introducing the Long-List or Short-List method, which gives a certain qualification in advance.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organizing and examining judges with an eye for considering project characteristics wa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level of design public offerings and to clarify the regulations on the reasons for exclusion, avoidance and avoidance of judges, including a review of whether or not to maintain the reasons for judges' expul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e-release the judges' list.

In the case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assessment metho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nted to define more clearly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experiences and performances reque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 the participating builders (bo) demonstrate performance, when the task redundancy is calculated, and the task for applying the penalty points, and to increase the scope of recognition of similar service performance for projects with design costs less than a notice, and other small architects could prepare room for small scale. Other measures were developed to lower the credit rating standard by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assessment standard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and to differentiate the assessment of the representatives and participants in the joint subcontracting method. In addition, some agencies have developed improvement measures for requesting and evaluating submissions at the level of design public offering when assessing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predicted changes in conditions resulting from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specifically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design public offer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14.06). Based on this, the "Guideline for Oper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Contribution" related to the design public offering method was developed, and the "Basic Evaluation Criteria for Project Performance Capacity S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Code" was derived for the assessment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